

제1923호 고양시보

2022년 11월 1일(화)

차 례

입법예고

고양시 공고 제2022-2654호	고양시 시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고양시 공고 제2022-2659호	고양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9
고양시 공고 제2022-2665호	고양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	43
고양시 공고 제2022-2678호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7
고양시 공고 제2022-2679호	고양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3

고양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우리시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고양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부터 제9조까지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1일

고 양 시 장

1. 자치법규명 : 고양시 시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 「지방세징수법」 개정에 따라 결손처분의 용어 정비 등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결손처분에 대한 사유를 구분하여 정리보류와 시효완성정리로 용어를 변경함(안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
- 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함.

4. 자치법규안 : 별첨

5.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6.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2년 11월 21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인터넷 등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연락처번호, 의견

라. 제출기관 : 고양시장 (징수과)

- 주 소 :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0

- 전 화 : 징수과 체납행정팀(031-8075-2261)

- 팩 스 : 031-8075-4939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고양시 시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견	비고

고양시 시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고양시 시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고양시 시세 징수 조례」의 시행 및 그 밖에”를 “「고양시 시세 징수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로 한다.

제3조를 삭제한다.

제4조 중 “법, 영, 조례”를 “「지방세징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징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고양시 시세 징수 조례」”로 하고, “비치하고”를 “갖추고”로 한다.

제5조제2항, 제3항 및 제4항 중 “기재”를 각각 “기록”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기재”를 “기록”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일치하는지 여부를”을 “일치하는지”로, “소인”을 “소인(消印)”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중 “기재”를 각각 “기록”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기재”를 “기록”으로 한다.

제10조 중 “아니한”을 “않는”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긴급을 요하는”을 “긴급한”으로,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그렇지 않다”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대하여는”을 “대해서는”으로 “기재”를 “기록”으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결손처리”를 “시효완성정리”로, “아니한다”를 “않는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아니한”을 “않은”으로 한다.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7조(정리보류 등) 법 제106조에 따른 정리보류 등은 별지 제1호서식의 결정결의서 및 별지 제9호서식의 정리보류표 및 별지 제9호의2서식의 시효완성정리표에 따른다.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조(지난 회계연도 정리보류 취소 시 이월액 정리) 해당 연도에서 지난 회계연도의 정리보류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징수부의 해당 연도 조정액란에 정리보류 취소액과 그 취소에 따라 새로 발생하는 가산금 및 증가산금을 합산한 금액을 체납액 이월액으로 기록해야 한다.

제1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9조(정리보류의 사후관리) 정리보류를 한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될 때까지 재산조회 등 사후관리를 해야 하며, 재산이 발견될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정리보류를 취소하고 압류 등 체납처분을 계속해야 한다.

제21조 중 “관리함으로써”를 “관리하여”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9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9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징수과
입 안 자	과 장 성 명	징수과장 강 복 선
	팀 장 성 명	체납행정팀장 양 미 례
	담 당 자 성명·전화	양 미 례 031-8075-2261

[☐ 부과 ☐ 신고납부 ☐ 감액 ☐ 정리보류 ☐ 시효완성정리] 결정결의서									
징수관		발의		년 월 일 (인)					
		징수부 등재		년 월 일 (인)					
분임징수관		납·감액 통지 또는 납세 고지서 발부		년 월 일 (인)					
팀장		납액 통지 제 호		년 월 일 (인)					
담당자		납기		년 월 일 (인)					
				년 월 일 (인)					
세입과목	관	세입연도		년도 세입					
		결정내용	본세	가산금	계				
	항	세액							
		가산세							
	목	결정액							
결정세액		금 원(₩)							
납세인원		시 구 번길 의 명							
적요		년 월 분 ○○세				수납부 등재	(인)		
						환급금 정리	(인)		
		내역 : 이면(별첨)과 같음.							
※ 감액·정리보류·시효완성정리는 붉은 글씨(전산 이용 시 “△” 또는 “-” 로 표시)로 기재									

(뒤 쪽)

내역서

[illegible]

※ 감액·정리보류·시효완성정리는 붉은 글씨(전산 이용 시 “△” 또는 “-”로 표시)로 기재

210mm×297mm(백상지 80g/m²)

[별지 제2호서식]

[부과·신고납부·감액·정리보류 등]결정액 통지부

[illegible]

210mm×297mm(백상지 80g/m²)

[별지 제3호서식]

[부과·신고납부·감액·정리보류 등]결정액 통지서

제 호

수입금출납원 귀하

아래와 같이 세입을 부과·신고납부·감액·정리보류·시효완성정리 발의일 : 년 월 일
결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세입징수관 (인)

세 목 [] 세 / 세목구분 [] / 시·구 []

[illegible]

210mm×297mm(백상지 80g/m²)

[별지 제5호서식]

징수부

회계연도 :	년도	
결의연월 :	년도	월분
제 목 :		
징수세목 :		

[illegible]

297mm×210mm(백상지 80g/m²)

정 리 보 류 표									
결재				「지방세징수법」 제106조제1항에 따라 정리보류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담당자	팀장	과장	국장						
채납자	주소				상호				
	성명				주민(법인)등록번호				
과세 번호	연도	기분	납기	세목	세액			과세물건	
					본세	가산금	계		
조사결과									
구분	조사내용	조사일	조사자						
			직급	성명	서명				
주민등록지 조사									
재산조사									
허가 및 기타사항									
주민등록지 등 조사를 위임하였을 경우 확인내용									
조사사항			조사 및 확인자						
			조사자	(담당자)	:	(인)			
					:	(인)			
			확인자	(과 장)	:	(인)			
					:	(인)			

- ※ 1. 지방세가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을)을 사용한다.
 2. 「지방세징수법」 제106조제2항에 따라 시효완성정리를 할 경우에는 별지 제9호의2서식을 사용한다.
 3. 조사내용을 상세히 기록하고자 할 경우 이면을 이용한다.

210mm×297mm(백상지 80g/㎡)

정 리 보 류 표	
조사사항	조사 및 확인자
1. 주민등록지 및 거주지 조사	
2. 재산조사	
3. 인·허가사항, 그 밖의 재산은닉 여부조사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9호서식(을)]

[illegible]

210mm×297mm(백상지 80g/m²)

[별지 제9호의2서식]

[illegible]

210mm×297mm(백상지 80g/m²)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양시 시세징수 조례」의 시행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고양시 시세징수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제3조(법령 등과의 관계) 시세의 징수에 관하여 「지방세징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징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고양시 시세 징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삭 제>
제4조(각종 대장 등의 작성·비치)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영, 조례 및 이 규칙에 따른 각종 대장 등을 <u>비치하고</u> 그 처리내역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산정보처리장치(이하 “전산”이라 한다)를 이용하여 작성·처리·저장하고 지방세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상시 확인 및 출력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비치·작성·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제4조(각종 대장 등의 작성·비치) ----- 「지방세징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징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고양시 시세 징수 조례」-----<u>갖추고</u>----- ----- ----- ----- ----- -----
제5조(보통징수 방법에 대한 처리 절차) ① (생략) ② 부과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부과결정을 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부과결정액 통지부에 그 결정내역을 <u>기재</u>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부과결정액 통지서 및 별지 제4호서식의 수납부에 그 결정사항을 <u>기재</u>하여 징수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부과부서의 장은 연대납세의무자에 대하여 제1항의 부과결정을 한 경우	제5조(보통징수 방법에 대한 처리 절차) ① (현행과 같음) ② ----- ----- ----- <u>기록</u>----- -----<u>기록</u>----- -----. ③ ----- -----

제2항의 수납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3. (생략)

④ 제2항의 통지를 받은 징수부서의 장은 별지 제5호서식의 징수부에 그 통지내역을 기재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신고납부 방법에 대한 처리 절차)

① 부과부서의 장은 시세신고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수납부에 날짜별로 그 처리내역을 기재하여 다음 달 5일까지 징수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징수부서의 장은 시 금고에서 시세영수필통지서(수납자료 전산화에 따른 전산파일 또는 전산자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통지받은 경우 세입계좌의 입금금액과 영수필통지서의 집계금액이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제1항의 수납부에 소인을 날인하거나 전자소인을 하여 지체 없이 부과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부과부서의 장은 제2항의 소인된 수납부를 통지받은 경우 그 수납세액에 대해 지체 없이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납부결정결의서에 따라 결정을 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신고납부결정액 통지부에 그 결정내역을 기재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신고납부결정액 통지서에 따라 징수부서의 장에게 통지하며,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한 사실이 확인된 자에 대해서는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징수부서의 장은 별지 제5호서식의 징수부에 그 통지내역을 기재하여야 한다.

--기록-----.

1.~3. (현행과 같음)

④ -----

-----기록-----
--.

제6조(신고납부 방법에 대한 처리 절차)

① -----

-----기록-----
-----.

② -----

-----일치하는지-----
-----소인(消印)-----
-----.

③ -----

-----기록-----

-----.

④ -----

-----기록-----.

제7조(부과의 취소 및 변경 등) ① (생략) ② 부과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감액결정을 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감액결정액 통지부에 그 결정내역을 기재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감액결정액 통지서 및 별지 제4호서식의 수납부에 그 결정사항을 기재하여 징수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부과의 취소 및 변경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 기록----- -----기록----- -----.
제10조(소인 불일치 자료 등의 처리) 징수부서의 장은 제9조에 따라 소인하였으나 부과내용과 일치하지 <u>아니한</u>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부과부서의 장의 협조를 받아 그 원인을 규명하여야 한다. 제15조(세입마감) ① 시장은 매년 12월 15일까지 보통징수의 방법에 따른 징수결정을 마감하고, 납부기한은 해당 연도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 다만, 납기 전 징수 등 조세채권 확보를 위하여 <u>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u> ② (생략)	제10조(소인 불일치 자료 등의 처리) -- ----- -----<u>않는</u>----- ----- ----- -. 제15조(세입마감) ① ----- ----- ----- ----- ----- ---<u>긴급한</u>-----<u>그렇지 않다.</u> ② (현행과 같음)
제16조(시세 미수납액의 이월) ① 징수부서의 장은 부과한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까지 수납되지 아니한 시세에 <u>대하여는</u> 다음해 1월 15일까지 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의 체납액 정리부에 그 체납내역 등을 <u>기재</u>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②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시세 체납액은 <u>결손처리</u>하고 제1항의 체납액 정리부를 작성하지 <u>아니한다.</u> ③ 징수부서의 장은 해당 연도에 부과결정한 시세가 해당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까지 수납되지 <u>아니한</u> 경우에는	제16조(시세 미수납액의 이월) ① ----- ----- -----<u>대해서는</u>----- ----- -----<u>기록</u>----- -----. ② ----- -----<u>시효완성정리</u>----- -----<u>않는다.</u> ③ ----- ----- -----<u>않은</u>-----

이를 다음 연도로 이월하고, 해당 연도의 장부는 마감하여야 한다. <u>제17조(결손처분) 법 제106조에 따른 결손처분은 별지 제1호서식의 결손결정결의서 및 별지 제9호서식의 결손처분표(갑, 을)에 따른다.</u> <u>제18조(지난 회계연도 결손처분 취소 시 이월액 정리) 해당 연도에서 지난 회계연도의 결손처분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징수부의 해당 연도 조정액란에 결손처분 취소액과 그 취소에 따라 새로 발생하는 가산금 및 증가산금을 합산한 금액을 체납액 이월액으로 기재하여야 한다.</u> <u>제19조(결손처분의 사후관리) 결손처분을 한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될 때까지 재산조회 등 사후관리를 하여야 하며, 재산이 발견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압류 등 체납처분을 속행하여야 한다.</u> <u>제21조(각종 통지 등의 전산처리) 부과부서의 장과 징수부서의 장이 법, 영, 조례 및 이 규칙에 따라 서로 통지하거나 처리하여야 할 각종 통지서 등을 전산으로 작성·처리 및 관리함으로써 지방세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상시 확인 및 출력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통지 또는 처리한 것으로 보며, 부과업무와 징수업무가 동일 부서 내에 담당별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u>	----- -----. <u>제17조(정리보류 등) 법 제106조에 따른 정리보류 등은 별지 제1호서식의 결정결의서 및 별지 제9호서식의 정리보류표 및 별지 제9호의2서식의 시효완성정리표에 따른다.</u> <u>제18조(지난 회계연도 정리보류 취소 시 이월액 정리) 해당 연도에서 지난 회계연도의 정리보류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징수부의 해당 연도 조정액란에 정리보류 취소액과 그 취소에 따라 새로 발생하는 가산금 및 증가산금을 합산한 금액을 체납액 이월액으로 기록해야 한다.</u> <u>제19조(정리보류의 사후관리) 정리보류를 한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될 때까지 재산조회 등 사후관리를 해야 하며, 재산이 발견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정리보류를 취소하고 압류 등 체납처분을 계속해야 한다.</u> <u>제21조(각종 통지 등의 전산처리) -----</u> ----- ----- -----관리하여 ----- ----- ----- -----.
---	---

현행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1호서식]

(앞 쪽)

☐ 부과 ☐ 신고납부 ☐ 감액 ☐ 결손 결정결의서					
징수관	발의		년 월 일 (인)		
	징수부등재		년 월 일 (인)		
분임징수관	납·감액통지 또는 납세고지서발부		년 월 일 (인)		
팀장	납세액통지		년 월 일 (인)		
담당자	납기		년 월 일 (인) 년 월 일 (인)		
세입과목	관	세입연도		년도 세입	
		결정내용	본세	가산금	계
	항	세액			
		가산세			
목	결정액				
결정세액	금 원(W)				
납세인원	시 구 반길 외 명				
적요	년 월 분 ○○세		수납부 등재	(인)	
			환급금 정리	(인)	
내역 : 이면(별첨)과 같음.					
※ 감액·결손은 붉은 글씨(전산 이용 시 “△” 또는 “-” 로 표시)로 기재					

210mm×297mm(백상지 80g/㎡)

개정안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1호서식]

(앞 쪽)

☐ 부과 ☐ 신고납부 ☐ 감액 ☐ 정리보류 ☐ 시효완성정리 결정결의서					
징수관	발의		년 월 일 (인)		
	징수부등재		년 월 일 (인)		
분임징수관	납·감액통지 또는 납세고지서발부		년 월 일 (인)		
팀장	납세액통지		년 월 일 (인)		
담당자	납기		년 월 일 (인) 년 월 일 (인)		
세입과목	관	세입연도		년도 세입	
		결정내용	본세	가산금	계
	항	세액			
		가산세			
목	결정액				
결정세액	금 원(W)				
납세인원	시 구 반길 외 명				
적요	년 월 분 ○○세		수납부 등재	(인)	
			환급금 정리	(인)	
내역 : 이면(별첨)과 같음.					
※ 감액·정리·보류·시효완성정리는 붉은 글씨(전산 이용 시 “△” 또는 “-” 로 표시)로 기재					

210mm×297mm(백상지 80g/㎡)

개 정 안

(4) (5)

[illegible]

210mm×297mm(백상지 30g/㎡)

개 정 안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illegible]

210mm×297mm(백상지 50g/㎡)

개 정 안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부과·신고납부·감액·정리보류 등]결정액 통지서

제 호
수입금출납원 귀하
아래와 같이 세입을 부과·신고납부·감액·청리보류·시효완성청리 발의일 년 월 일
결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세입징수관 (인)
세 목 [] 제 / 세목구분 [] / 시 구 []

[illegible]210mm×297mm(백상지 80g/m²)

개 정 안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징수부

[illegible][illegible]

0.07mm×210mm(약 0.07g/1ml)

현행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갑)]

(앞 쪽)

결 손 처 분 표										
결재				「지방세징수법」 제106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결손 처분하고자 합니다.						
담당자	팀장	과장	국장	년 월 일						
채납자	주소				상호					
	성명				주민(법인)등록번호					
과세 번호	연도	기분	납기	세목	세액			과세물건		
					본세	가산금	계			
조사결과										
구분	조사내용			조사일	조사자					
					직급	성명	서명			
주민등록지 조사										
재산조사										
허가 및 기타사항										
주민등록지 등 조사를 위임하였을 경우 확인내용										
조사사항					조사 및 확인자					
					조사자	(담당자)	:	(인)		
					확인자	(과 장)	:	(인)		

- ※ 1. 지방세가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을)을 사용한다.
 2. 「지방세징수법」 제106조제1항제3호의 사유에 따라 결손처분을 할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을)을 사용한다.
 3. 조사내용을 상세히 기록하고자 할 경우 이면을 이용한다.

210mm×297mm(백상지 80g/㎡)

개정안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갑)]

(앞 쪽)

정 리 보 류 표										
결재				「지방세징수법」 제106조제1항에 따라 정리보류하고자 합니다.						
담당자	팀장	과장	국장	년 월 일						
채납자	주소				상호					
	성명				주민(법인)등록번호					
과세 번호	연도	기분	납기	세목	세액			과세물건		
					본세	가산금	계			
조사결과										
구분	조사내용			조사일	조사자					
					직급	성명	서명			
주민등록지 조사										
재산조사										
허가 및 기타사항										
주민등록지 등 조사를 위임하였을 경우 확인내용										
조사사항					조사 및 확인자					
					조사자	(담당자)	:	(인)		
					확인자	(과 장)	:	(인)		

- ※ 1. 지방세가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을)을 사용한다.
 2. 「지방세징수법」 제106조제2항에 따라 시효완성정리분 할 경우에는 별지 제9호의2서식을 사용한다.
 3. 조사내용을 상세히 기록하고자 할 경우 이면을 이용한다.

210mm×297mm(백상지 80g/㎡)

개 정 안

(뒤 쪽)

210mm×297mm(책상지 80g/㎡)

(41) (27)210mm × 297mm(백상지 80g/m²)

개 정 안

[별지 제9호서식(을)]

[illegible]210mm×297mm(책상지 80g/cm²)

고양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우리시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고양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부터 제9조까지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1일

고 양 시 장

1. 자치법규명 : 고양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3조의3(지역먹거리계획의 수립·시행)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지역먹거리계획의 수립·시행을 규정함(안 제5조).
- 나. 지역먹거리위원회 설치·운영을 규정함(안 제7조부터 제15조까지).
- 다.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설치·운영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16조).
- 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함.

4. 자치법규안 : 별첨

5. 중요사항대비표 : 별첨

6.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2년 11월 21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인터넷 등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연락전화번호, 의견

라. 제출기관 : 고양시장 (농산유통과)

- 주 소 :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0

- 전 화 : 농산유통과 농산유통팀(031-8075-4614)

- 팩 스 : 031-8075-4890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고양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견	비고

고양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고양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고양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3조의3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먹거리”란 고양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생산된 농수축산물과 시에 소재한 업체에서 생산·가공된 식품을 말한다.
2. “먹거리 보장”이란 모든 사람이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 안전하고 영양이 풍부한 먹거리를 나이, 성별, 물리적·사회적·경제적 여건에 따른 차별 없이 확보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3. “지역먹거리계획”이란 지역먹거리의 생산, 가공, 유통, 소비, 재활용 등에 이르는 모든 과정이 통합·연계되어 지역먹거리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는 종합계획을 말한다.
4. “지역먹거리 선순환 체계”란 지역먹거리가 시에 우선 공급되어 소비되도록 하는 유통체계를 말한다.
5. “먹거리통합지원센터”란 지역먹거리가 시 지역 내에서 선순환될 수 있도록 식재료의 기획생산, 유통 및 정책기능을 수행하는 통합적 지원 조직 및 운영체계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먹거리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 ② 시장은 먹거리가 부족한 지역주민에 대한 먹거리 지원을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 ③ 시장은 지역주민의 먹거리 보장을 위해 지역먹거리가 우선 공급되도록 해야 한다.
- ④ 시장은 지역먹거리계획의 수립 및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지역 시민 사회, 단체 등과 협력해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지역 먹거리 보장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5조(지역먹거리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지역주민의 먹거리 보장을 위하여 지역먹거리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역먹거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속가능한 먹거리 보장을 위한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
2. 지역먹거리 관련 생산·소비·유통·폐기 현황 및 분석
3. 지역에서 생산한 먹거리의 지역 내 우선 공급에 관한 사항
4.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먹거리의 생산에 관한 사항
5. 지역 중소농 조직화 및 식품가공 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
6. 취약계층에 대한 먹거리 보장에 관한 사항
7. 도농상생에 관한 사항
8. 식생활교육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역먹거리계획 시행) ① 시장은 지역먹거리계획의 시행 및 평가를 위하여 전담부서를 설치하거나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매년 지역먹거리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지역먹거리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미리 다음 각 호의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주민의 먹거리 접근성, 식생활, 영양상태 등에 대한 실태조사
2. 주민 먹거리 유통체계 및 현황, 먹거리 안전 및 건강에 관한 사항,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및 처리, 재활용 등에 관한 조사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지역먹거리위원회 설치) ① 시장은 지역먹거리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양시 지역먹거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역먹거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지역먹거리계획의 시행 결과 평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공동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부시장과 제3항에 해당하는 위원 중 호선(互選)된 사람이 공동으로 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지역먹거리계획 관련 업무 담당 실·국·소장 중 시장이 임명하는 사람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고양시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2명
2. 고양교육지원청에서 추천한 사람
3. 생산자·소비자 단체 또는 농식품산업 관련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그 밖에 지역먹거리계획 수립·시행 관련 학식과 전문성을 갖춘 사람

제9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심신장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1조제3항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제11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나 그의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공동으로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위원회 소집 등) ① 위원장은 공동으로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의 공동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 소집한다.

1. 공동위원장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2. 재적 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3. 제7조제2항 각 호의 심의 요구가 있을 때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먹거리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공동위원장이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14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에 두는 분과위원회의 분야 및 각 분과위원회가 심의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먹거리생산·유통 분과위원회: 지속가능한 먹거리 생산기반 확대 및 자족 기능 확충 방안, 안전한 먹거리 생산·유통 체계 구축 등

2. 먹거리복지·공동체 분과위원회: 취약계층 먹거리 보장, 복지 분야 공공급식 확충, 식생활교육·문화행사 확대 방안 등

3. 공공급식 분과위원회: 공공조달 유통체계 확립, 학교급식·공공급식 확대 기반 조성 방안 등

4. 먹거리창업·일자리 분과위원회: 먹거리 관련 창업·일자리 창출, 지역먹거리 가공 확대 등 먹거리 산업 발전 방안 등

③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분과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분과위원회 운영에 관하여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동위원장이 정한다.

제15조(수당 등) 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의 위촉 위원에게는 회의에 참석하거나 위원회 활동에 참여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먹거리통합지원센터의 설치) ① 시장은 지역먹거리계획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고양시 먹거리통합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공공급식에 지역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지역농산물 생산·가공·유통의 체계적 관리
 2. 농산물 생산자 조직화 및 안전성 관리
 3. 먹거리 관련 교육 및 홍보 지원
 4. 먹거리 관련 협력기구 운영·지원
 5. 그 밖에 지역먹거리계획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 ② 시장은 지원센터에 제1항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적정 규모의 전용 물류센터를 둘 수 있다.
- ③ 시장은 지원센터의 원활한 역할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7조(지원센터의 운영 등) ① 시장은 지원센터를 체계적으로 관리 및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인력을 둘 수 있다.

1. 지원센터의 운영 총괄과 대외협력업무의 추진을 위한 센터장
 2. 공공급식에 관한 교육·홍보, 생산·물류·유통, 재무관리 등 지원센터의 업무 처리를 위한 관리요원
- ② 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시 소속 공무원, 시 교육지원청 소속 공무원, 생산자단체의 대표자, 급식재료 공급업체의 대표자 등으로 구성하는 민·관 협의체를 운영할 수 있다.

제18조(지원센터의 관리위탁) 시장은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시설의 전체 또는 일부를 공공성을 담보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생산 및 유통, 마케팅을 실현할 수 있는 전문조직에 위탁할 수 있다.

제19조(재정지원)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지역먹거리계획의 수립·시행에 참여하는 기관·단체·법인 또는 개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먹거리 정책 자문위원회 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고양시 먹거리 정책 자문위원회의 위원이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되어 임기가 종료되지 않은 경우 해당 위원은 이 조례 시행일에 그 임기가 종료된 것으로 본다.

소관부서		농산유통과
입안자	과장 성명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팀장 성명	농산유통팀장 문유주
	담당자 성명·전화	김인경 031-8075-4614

중요사항 대비표

현행	개정안
<u>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 먹거리 순환 체계 확립을 통하여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의 보편적 가치를 실현하고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u> <u>제9조(먹거리 정책 자문위원회) ① 시장은 먹거리전략 및 주요 사업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먹거리 정책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u> <u>② 자문위원회 산하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u> <u>③ 분과위원회 구성에 관한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u> <u>제14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u> <u>② 위원장은 제1부시장으로 한다. 부위원장은 위촉된 위원 중에 호선 한다.</u> <u>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u> <u>1. 당연직 위원 : 먹거리 기본권 관련 업무담당 실·국·소장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는 사람</u> <u>2. 위촉직 위원 : 지속가능한 먹거리체계 구현과 먹거리보장에 대한 경험이 풍부하며 먹거리에 대한 식견과 전문성을 가진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u> <u>④ 위원을 위촉할 때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u> <u>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u>	<u>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3조의3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u> <u><삭 제></u> <u>제8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u> <u>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부시장과 제3항에 해당하는 위원 중 호선(互選)된 사람이 공동으로 된다.</u> <u>③ 당연직 위원은 지역먹거리계획 관련 업무 담당 실·국·소장 중 시장이 임명하는 사람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u> <u>1. 고양시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2명</u> <u>2. 고양교육지원청에서 추천한 사람</u> <u>3. 생산자·소비자 단체 또는 농식품산업 관련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u> <u>4. 그 밖에 지역먹거리계획 수립·시행 관련 학식과 전문성을 갖춘 사람</u>

현행	개정안
<u>임하는 기간으로 한다.</u> <u>⑥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u> <u><신 설></u> <u><신 설></u>	<u>제13조(위원회 소집 등) ① 위원장은 공동으로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의 공동의장이 된다.</u> <u>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 소집한다.</u> <u>1. 위원장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u> <u>2. 재적 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u> <u>3. 제7조제2항 각 호의 심의 요구가 있을 때</u> <u>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u> <u>제14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u> <u>② 위원회에 두는 분과위원회의 분야 및 각 분과위원회가 심의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u> <u>1. 먹거리생산·유통 분과위원회: 지속가능한 먹거리 생산기반 확대 및 자족 기능 확충 방안, 안전한 먹거리 생산·유통 체계 구축 등</u> <u>2. 먹거리복지·공동체 분과위원회: 취약계층 먹거리 보장, 복지 분야 공공급식 확충, 식생활교육·문화행사 확대 방안 등</u> <u>3. 공공급식 분과위원회: 공공조달 유통체계 확립, 학교급식·공공급식 확대 기반 조성 방안 등</u> <u>4. 먹거리창업·일자리 분과위원회: 먹거리 관련 창업·일자리 창출, 지역먹거리 가공 확대 등 먹거리 산업 발전 방안 등</u>

현행	개정안
<신 설>	③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분과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분과위원회 운영에 관하여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동위원장이 정한다. 제16조(먹거리통합지원센터의 설치) ① 시장은 지역먹거리계획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먹거리통합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공공급식에 지역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지역농산물 생산·가공·유통의 체계적 관리 2. 농산물 생산자 조직화 및 안전성 관리 3. 먹거리 관련 교육 및 홍보 지원 4. 먹거리 관련 협력기구 운영·지원 5. 그 밖에 지역먹거리계획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② 시장은 지원센터에 제1항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적정 규모의 전용 물류센터를 둘 수 있다. ③ 시장은 지원센터의 원활한 역할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7조(지원센터의 운영 등) ① 시장은 지원센터를 직접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지원센터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인력을 둘 수 있다. 1. 지원센터의 운영 총괄과 대외협력업무의 추진을 위한 센터장
<신 설>	

현행	개정안
<신 설>	2. 공공급식에 관한 교육·홍보, 생산·물류·유통, 재무관리 등 지원센터의 업무 처리를 위한 관리요원 ② 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시 소속 공무원, 시 교육지원청 소속 공무원, 생산자 단체의 대표자, 급식재료 공급업체의 대표자 등으로 구성하는 민·관 협의체를 운영할 수 있다. ③ 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시 소속 공무원, 시 교육지원청 소속 공무원, 생산자 단체의 대표자, 급식재료 공급업체의 대표자 등으로 구성하는 지원센터 운영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지원센터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8조(지원센터의 관리위탁) 시장은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시설의 전체 또는 일부를 공공성을 담보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생산 및 유통, 마케팅을 실현할 수 있는 전문조직에 위탁할 수 있다.

고양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우리시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고양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부터 제9조까지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1일

고 양 시 장

1. 자치법규명 : 고양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 시행규칙 폐지
규칙안

2. 제안이유

- 고양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 제9조(먹거리 정책 자문위원회) 삭제에 따라 고양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 시행규칙을 폐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이 규칙을 폐지함.

4. 자치법규안 : 별첨

5. 신·구조문대비표 : 해당사항 없음

6.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2년 11월 21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인터넷 등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연락전화번호, 의견

라. 제출기관 : 고양시장 (농산유통과)

- 주 소 :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0

- 전 화 : 농산유통과 농산유통팀(031-8075-4614)

- 팩 스 : 031-8075-4890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고양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 시행규칙 폐지
규칙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견	비고

고양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 시행규칙

고양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 시행규칙은 폐지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농산유통과
입안자	과장 성명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팀장 성명	농산유통팀장 문유주
	담당자 성명·전화	김인경 031-8075-4614

고양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우리시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고양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부터 제9조까지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1일

고 양 시 장

1. 자치법규명 :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민선8기 공약사항 및 역점사업의 효율적이고 성공적인 추진을 위하여 조직 체계를 개편, 구축하고자 함.
- 특례시에 부여된 조직 권한 및 지방의회 정책지원 강화 등 지역현안 및 국가정책 추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기구 조정

- 1) 3·4급, 4급 기구 및 소관사무를 조정함(안 제3조 및 제4조, 제8조부터 제15조까지, 제26조, 제27조 및 별표 7).

가) 신설(+2) : 자족도시실현국, 교통국

나) 폐지(△1) : 시민안전주택국

다) 명칭변경(5)

- 일자리경제국 → 일자리재정국, 복지여성국 → 사회복지국
- 도시교통정책실 → 도시주택정책실, 도시균형개발국 → 도시혁신국
- 도로관리사업소 → 도로건설사업소

2) 4·5급 기구를 신설함(안 제30조).

○ 덕양구청(+1) : 대민협력관

3) 5급 기구 및 소관사무를 조정함(안 제5조부터 제15조까지, 제18조 및 제26조).

가) 신설(+10)

- 본청(7) : 소통협치담당관, 도시디자인담당관, 인적자원과, 스마트 시티과, 경제자유구역추진과, 미래산업과, 신도시정비과
- 직속기관(2) : 일산동구보건소 건강증진과, 일산서구보건소 건강증진과
- 사업소(1) : 푸른도시사업소 일산공원관리과

나) 부서폐지 및 기능이관(△4)

- 평화미래정책관, 도시브랜드담당관, 녹색도시담당관, 도시균형개발과

다) 통폐합(△4)

- 일자리정책과 + 청년담당관 → 일자리정책과
- 복지정책과 + 찾아가는복지과 → 복지정책과
- 재정비관리과 + 도시재생과 → 도시정비과
- 공사과 + 신청사건립단 → 공사과

라) 명칭·배치변경(5)

- 시민안전과(시민안전주택국) → 시민안전담당관(제2부시장)
- 재난대응과(시민안전주택국) → 재난대응담당관(제2부시장)
- 도시정비과(도시교통정책실) → 도시개발과(도시혁신국)

- 철도교통과(도시교통정책실) → 교통정책과(교통국)
- 건축디자인과(시민안전주택국) → 건축과(도시주택정책실)

마) 명칭변경, 기능조정 및 기능이관(4)

- 여성가족과 → 가족정책과, 아동청소년과 → 아동보육과
- 덕양구보건소 보건정책과 → 덕양구보건소 보건행정과
- 덕양구보건소 질병관리과 → 덕양구보건소 건강증진과
- 푸른도시사업소 공원관리과 → 푸른도시사업소 덕양공원관리과

바) 배치변경(7)

- 세정과, 징수과 : 자치행정국 → 일자리재정국
- 주택과, 토지정보과 : 시민안전주택국 → 도시주택정책실
- 버스정책과, 주차교통과, 도로정책과 : 도시교통정책실 → 교통국

나. 정원 조정(안 제34조 및 별표 6).

1) 총 정원 : (현행) 3,403명 → (조정) 3,444명 (증 41명)

2) 직급별 정원 조정

가) 4급 : (현행) 16명 → (조정) 17명 (증 1명)

나) 4·5급 : (현행) 3명 → (조정) 4명 (증 1명)

다) 5급 : (현행) 150명 → (조정) 152명 (증 2명)

라) 6급 이하 : (현행) 3,189명 → (조정) 3,226명 (증 37명)

3) 기관별 정원 조정

가) 집행기관 : (현행) 3,346명 → (조정) 3,378명 (증 32명)

나) 의회사무국 : (현행) 57명 → (조정) 66명 (증 9명)

4. 자치법규안 : 별첨

5.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6.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2년 11월 7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인터넷 등

다. 기재내용 : 주소·성명·연락전화번호·의견

라. 제출기관 : 고양시장 (기획정책관)

- 주 소 :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0(주교동)
- 전 화 : 기획정책관 조직제안팀(031-8075-2394)
- 팩 스 : 031-8075-4901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견	비고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1호 각 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 가. 시민안전담당관, 재난대응담당관 소관 사무
- 나. 도시주택정책실, 자족도시실현국, 교통국, 도시혁신국 소관 사무
- 다. 푸른도시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도로건설사업소 소관 사무

제4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1. 제1부시장: 기획조정실, 자치행정국, 일자리재정국, 사회복지국, 기후환경국, 교육문화국
- 2. 제2부시장: 도시주택정책실, 자족도시실현국, 교통국, 도시혁신국

제5조제1항 중 “평화미래정책관”을 “소통협치담당관, 도시디자인담당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감사관, 언론홍보담당관, 청년담당관”을 “감사관, 언론홍보담당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신청사건립단, 녹색도시담당관”을 “시민안전담당관, 재난대응담당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보좌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 1. 소통협치담당관: 시민과의 소통, 갈등 관리에 관한 사항
- 2. 도시디자인담당관: 도시경관, 공공디자인, 도시브랜드에 관한 사항
- 3. 감사관: 공무원의 윤리·감사 및 고충 민원 처리에 관한 사항
- 4. 언론홍보담당관: 시정보도, 시정 홍보, 공고·고시에 관한 사항
- 5. 시민안전담당관: 안전정책 총괄·조정, 안전점검, 민방위에 관한 사항
- 6. 재난대응담당관: 재난 상황 관리, 비상대비 등 재난·재해 예방 대책 수립, 지하 안전 관리에 관한 사항

제6조제1항 중 “기획정책관, 예산담당관, 도시브랜드담당관, 법무담당관, 정보통신담당관”을 “기획정책관, 예산담당관, 법무담당관, 정보통신담당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7조제1항 중 “행정지원과, 주민자치과, 민원여권과, 세정과, 징수과, 회계과, 재산관리과”를 “행정지원과, 인적자원과, 주민자치과, 민원여권과, 회계과, 재산관리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자치행정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공무원의 복무, 직원복지에 관한 사항
2. 국제협력, 기록물관리, 정보공개 및 중대산업재해예방에 관한 사항
3. 공무원의 인사, 교육에 관한 사항 및 공무원 운영에 관한 사항
4. 구 및 동의 행정지도, 국가 및 중앙부처 시책추진에 관한 사항
5. 자치행정, 주민자치, 민간협력, 자치분권, 인권증진 및 자원봉사에 관한 사항
6. 민원사무, 여권 및 콜센터 운영에 관한 사무
7. 경리 및 계약에 관한 사항
8. 국·공유지 재산관리, 청사관리에 관한 사항

제8조의 제목 “(일자리경제국에 두는 과)”를 “(일자리재정국에 두는 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일자리경제국”을 “일자리재정국”으로, “일자리정책과, 기업지원과, 소상공인지원과, 전략산업과”를 “일자리정책과, 소상공인지원과, 세정과, 징수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일자리재정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일자리 창출, 일자리 지원, 취업 지원, 공공일자리, 노사 협력에 관한 사항
2. 청년 일자리, 복지 등 지원에 관한 사항
3. 지역경제,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4. 소상공인 상생협력에 관한 사항
5. 지방세정에 관한 사항
6.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 관한 사항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사회복지국에 두는 과) ① 사회복지국에 복지정책과, 가족정책과, 노인복지과, 장애인복지과, 아동보육과를 둔다.

② 사회복지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시민의 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
2. 저소득층 등 사회적 약자의 복지에 관한 사항
3.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에 관한 사항
4. 여성상담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사항
5. 다문화 가족과 구성원들의 권익보호와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6. 여성인력 개발과 취업 알선에 관한 사항
7. 청소년에 관한 사항
8. 노인 복지에 관한 사항
9. 장애인 복지에 관한 사항
10. 아동보육, 아동복지, 아동보호에 관한 사항

제10조제2항제2호 중 “에너지산업”을 “에너지산업, 친환경이동수단”으로 한다.

제12조 및 제13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도시주택정책실에 두는 과) ① 도시주택정책실에 도시계획정책관, 주택과, 건축과, 토지정보과, 스마트시티과를 둔다.

② 도시주택정책실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도시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도시계획에 관한 검토·기획·지도 및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3.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관한 사항
4.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사항
5. 주거복지에 관한 사항
6. 일반주택 건축, 건축물 안전·유지관리 및 광고물에 관한 사항
7. 지적 및 도로명 주소에 관한 사항
8. 스마트도시 조성 업무에 관한 사항

제13조(자족도시실현국에 두는 과) ① 자족도시실현국에 경제자유구역추

진과, 기업지원과, 전략산업과, 미래산업과를 둔다.

② 자족도시실현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경제자유구역 지정 추진, 기업유치, 테크노밸리 조성에 관한 사항
2. 기업지원, 지식산업센터 및 공장등록, 창업지원에 관한 사항
3. 신성장산업, 마이스산업, 킨텍스 지도 및 감독에 관한 사항
4. 4차산업, 방송영상산업, 콘텐츠산업, 드론산업에 관한 사항

제14조부터 제37조까지를 제15조부터 제38조까지로 하고,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교통국에 두는 과) ① 교통국에 교통정책과, 버스정책과, 주차교통과, 도로정책과를 둔다.

② 교통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교통 체계 관리 개선 사업 및 지능형 교통 시스템에 관한 사항
2. 도시 교통 정비 계획 수립, 교통 시설에 관한 사항
3. 철도(일반·광역) 업무에 관한 사항
4. 버스 정책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공영주차장 조성, 공유주차에 관한 사항
6. 교통지도,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 택시 및 화물운수에 관한 사항
7. 도로 건설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제15조(종전의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도시혁신국에 두는 과) ① 도시혁신국에 신도시정비과, 도시정비과, 도시개발과를 둔다.

② 도시혁신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신도시 정비에 관한 사항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재건축, 재개발에 관한 사항
3. 도시개발, 택지개발, 공공개발에 관한 사항

제3장제1절(제15조부터 제18조까지)을 제3장제1절(제16조부터 제19조까지)로 한다.

제16조(중전의 제15조)제2항 중 “시행령 제10조 및제11조”를 “시행령 제10조 및 제11조”로 한다.

제18조(중전의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조(보건소에 두는 과) 덕양구보건소, 일산동구보건소 및 일산서구보건소에 각각 보건행정과와 건강증진과를 둔다.

제2절(제19조부터 제22조까지)을 제2절(제20조부터 제23조까지)로 한다.

제4장(제23조부터 제26조까지)을 제4장(제24조부터 제27조까지)으로 한다.

제26조(중전의 제25조)제1호 중 “공원관리과”를 “덕양공원관리과, 일산공원관리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도로관리사업소”를 “도로건설사업소”로 한다.

제27조(중전의 제26조)제1호마목 중 “도시근린공원”을 “공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도로관리사업소”를 “도로건설사업소”로 한다.

제5장제1절(제27조부터 제29조까지)을 제5장제1절(제28조부터 제30조까지)로 한다.

제29조(중전의 제28조)제1항 중 “제27조”를 “제28조”로 한다.

제30조(중전의 제29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덕양구에는 구청장을 보좌하는 대민협력관을 둔다.

제2절(제30조부터 제32조까지)을 제2절(제31조부터 제33조까지)로 한다.

제6장(제33조부터 제37조까지)을 제6장(제34조부터 제38조까지)으로 한다.

제34조(종전의 제3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3,403명” 을 “3,444명” 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3,346명” 을 “3,378명” 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57명” 을 “66명” 으로 한다.

별표 2의 사업소명란 중 “도로관리사업소” 를 “도로건설사업소” 로 한다.

별표 6 및 별표 7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고양시 공동구 관리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도시교통정책실장” 을 “교통국장” 으로 한다.

② 고양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시민안전주택국장” 을 “도시혁신국장” 으로 한다.

③ 고양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일자리경제국장, 도시교통정책실장, 시민안전주택국장, 도로관리사업소장” 을 “일자리재정국장, 도시주택정책실장, 교통국장, 도로건설사업소장” 으로 한다.

④ 고양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복지여성국장” 을 “사회복지국장” 으로 한다.

⑤ 고양시 대중교통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도시교통정책실장” 을 “교통국장” 으로 한다.

⑥ 고양시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도시교통정책실장”을 “교통국장”으로 한다.

⑦ 고양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5항 중 “도시교통정책실장”을 “도시혁신국장”으로 하고, 제15조제3항 중 “도시교통정책실장”을 “도시혁신국장”으로, “도시정비과장”을 “도시개발과장”으로 한다.

⑧ 고양시 도시계획 토지구획정리사업 토지평가협의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도시교통정책실장”을 “도시혁신국장”으로 한다.

⑨ 고양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3항 중 “도시균형개발국장”을 “도시혁신국장”으로, “도시교통정책실장”을 “도시주택정책실장”으로 한다.

⑩ 고양시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중 “도시균형개발국장”을 “도시혁신국장”으로 한다.

⑪ 고양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여성가족과장”을 “가족정책과장”으로 한다.

⑫ 고양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일자리경제국장, 복지여성국장”을 “일자리재정국장, 사회복지국장”으로 한다.

⑬ 고양시 시민 행복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 중 “도시교통정책실장, 복지여성국장”을 “도시주택정책실장, 사회복지국장”으로 한다.

⑭ 고양시 신청사 건립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도시교통정책실장”을 “도시주택정책실장”으로, “신청사건립단장”을 “공사과장”으로 한다.

⑮ 고양시 중소기업 기술개발자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일자리경제국장” 을 “자족도시실현국장” 으로 한다.

⑩ 고양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 중 “도시교통정책실장, 일자리경제국장” 을 “도시주택정책실장, 일자리재정국장” 으로, “도시균형개발국장” 을 “도시혁신국장” 으로 한다.

⑪ 고양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시민안전주택국장” 을 “시민안전담당관” 으로 한다.

⑫ 고양화훼단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도시교통정책실장” 을 “도시주택정책실장” 으로 한다.

⑬ 고양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재난방재업무 담당국장” 을 “재난대응담당관” 으로 한다.

소 관 부 서		기획정책관
입 안 자	부 서 장 성 명	기획정책관 최 현 석
	팀 장 성 명	조직제안팀장 김 문 식
	담 당 자 성명·전화	박 선 용 (031-8075-2394)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제36조 관련)

(단위: 명)

직급별		합계	본청	의회	직속 기관	사업소	구	동
합계		3,444	-					
정무직	소계	1	-					
	시장	1	1	-	-	-	-	-
일반직	소계	3,409	-					
	2급	2	2	-	-	-	-	-
	3.4급	4	2	1	-	-	1	-
	4급	17	8	-	3	4	2	-
	4.5급	4	3	-	-	-	1	-
	5급	152	46	5	11	13	33	44
	6급 이하	3,226	-					
	전문경력관 소계	4	-					
별정직	소계	5	5	-	-	-	-	-
	5급 상당	1	1	-	-	-	-	-
	6급상당 이하	4	4	-	-	-	-	-
지도직	소계	20	-					
	지도관	3	-	-	3	-	-	-
	지도사	17	-					
연구직	소계	9	-					
	연구사	9	-					

한시정원의 직급 및 운영시한(제38조 관련)

관 리 기관별	소속부서	구 분		정원 (명)	운영시한	비고
		직종	직급			
본청	자족도시실현국 경제자유구역추진과	일반직 (1)	4급	1	2024.12.31.	
	도시혁신국 신도시정비과	일반직 (1)	4급	1	2025.12.31.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조(부시장) ①~③ (생략) 1. (생략) 가. 신청사건립단, 녹색도시담당관 소관 사무 나. 도시교통정책실, 시민안전주택국, 도시균형개발국 소관 사무 다. 푸른도시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사무 2.~3. (생략) 제4조(실·국의 설치) (생략) 1. 제1부시장: 기획조정실, 자치행정국, 일자리경제국, 복지여성국, 기후환경국, 교육문화국 2. 제2부시장: 도시교통정책실, 시민안전주택국, 도시균형개발국 제5조(보좌기관) ① 시장 밑에 <u>평화미래정책관</u>을 둔다. ② 제1부시장 밑에 <u>감사관, 언론홍보담당관, 청년담당관</u>을 둔다. ③ 제2부시장 밑에 <u>신청사건립단, 녹색도시담당관</u>을 둔다. ④ 보좌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u>평화미래정책관</u>: 남북교류, 평화통일 경제특구, 자치분권 확보 및 인권증진, 시민과의 소통에 관한 사항 2. <u>감사관</u>: 공무원의 윤리·감사 및 고충 민원처리에 관한 사항 3. <u>언론홍보담당관</u>: 시정 홍보, 공고·고시 및 시 홈페이지에 관한 사항 4. <u>청년담당관</u>: 청년의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지원에 관한 사항 5. <u>신청사건립단</u>: 신청사 건립에 관한	제3조(부시장) ①~③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가. <u>시민안전담당관, 재난대응담당관 소관 사무</u> 나. <u>도시주택정책실, 자족도시실현국, 교통국, 도시혁신국 소관 사무</u> 다. <u>푸른도시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도로건설사업소 소관 사무</u> 2.~3. (현행과 같음) 제4조(실·국의 설치) (현행과 같음) 1. 제1부시장: 기획조정실, 자치행정국, 일자리재정국, 사회복지국, 기후환경국, 교육문화국 2. 제2부시장: <u>도시주택정책실, 자족도시실현국, 교통국, 도시혁신국</u> 제5조(보좌기관) ① -----<u>소통협치담당관, 도시디자인담당관</u>-----. ② -----<u>감사관, 언론홍보담당관</u>-----. ③ -----<u>시민안전담당관, 재난대응담당관</u>-----. ④ 보좌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u>소통협치담당관</u>: 시민과의 소통, 갈등 관리에 관한 사항 2. <u>도시디자인담당관</u>: 도시경관, 공공디자인, 도시브랜드에 관한 사항 3. <u>감사관</u>: 공무원의 윤리·감사 및 고충 민원 처리에 관한 사항 4. <u>언론홍보담당관</u>: 시정보도, 시정 홍보, 공고·고시에 관한 사항 5. <u>시민안전담당관</u>: 안전정책 총괄·조정, 안전점검, 민방위에 관한 사항

현행	개정안
<u>사항</u> 6. <u>녹색도시담당관: 녹색건축, 친환경 이동수단, 도심숲 조성, 사회주택 활성화에 관한 사항</u> 제6조(기획조정실에 두는 과) ① 기획조정실에 <u>기획정책관, 예산담당관, 도시브랜드담당관, 법무담당관, 정보통신담당관</u>을 둔다. ② (생략) 1~3. (생략) 4. <u>도시브랜드 개발, 국내외 스포츠마케팅에 관한 사항</u> 5. <u>국제협력, 국제교류, 국제통상에 관한 사항</u> 6~8. (생략) 제7조(자치행정국에 두는 과) ① 자치행정국에 <u>행정지원과, 주민자치과, 민원여권과, 세정과, 징수과, 회계과, 재산관리과</u>를 둔다. ② 자치행정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u>공무원의 복무, 인사, 교육, 복지 및 공무원 운영에 관한 사항</u> 2. <u>기록물의 관리 및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u> 3. <u>구 및 동의 행정지도, 국가 및 중앙부처 시책추진에 관한 사항</u> 4. <u>자치행정, 주민자치, 민간협력 및 자원봉사에 관한 사항</u> 5. <u>민원사무, 여권 및 콜센터 운영에 관한 사무</u> 6. <u>지방세정에 관한 사항</u> 7. <u>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u>	6. <u>재난대응담당관: 재난상황관리, 비상대비 등 재난·재해 예방 대책 수립, 지하 안전 관리에 관한 사항</u> 제6조(기획조정실에 두는 과) ① ----- ---<u>기획정책관, 예산담당관, 법무담당관, 정보통신담당관</u>----- ----. ② (현행과 같음) 1~3. (현행과 같음) <삭제> <삭제> 6~8. (현행과 같음) 제7조(자치행정국에 두는 과) ① ----- -----<u>행정지원과, 인적자원과, 주민자치과, 민원여권과, 회계과, 재산관리과</u>----- -----. ② 자치행정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u>공무원의 복무, 직원복지에 관한 사항</u> 2. <u>국제협력, 기록물관리, 정보공개 및 중대산업재해예방에 관한 사항</u> 3. <u>공무원의 인사, 교육에 관한 사항 및 공무원 운영에 관한 사항</u> 4. <u>구 및 동의 행정지도, 국가 및 중앙부처 시책추진에 관한 사항</u> 5. <u>자치행정, 주민자치, 민간협력, 자치분권, 인권증진 및 자원봉사에 관한 사항</u> 6. <u>민원사무, 여권 및 콜센터 운영에 관한 사무</u>

현행	개정안
<u>관한 사항</u> 8. <u>경리 및 계약에 관한 사항</u> 9. <u>국·공유지 재산관리, 청사관리에 관한 사항</u> 제8조(일자리경제국에 두는 과) ① <u>일자리경제국에 일자리정책과, 기업지원과, 소상공인지원과, 전략산업과를 둔다.</u> ② <u>일자리경제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u> 1. <u>일자리창출, 일자리지원, 취업지원, 공공일자리, 노사협력에 관한 사항</u> 2. <u>기업 지원, 기업유치, 공장등록에 관한 사항</u> 3. <u>지역경제, 공유경제,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u> 4. <u>소상공인 상생협력에 관한 사항</u> 5. <u>마이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u> 6. <u>지식정보산업, 첨단산업 및 콘텐츠산업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u> 7. <u>한국국제전시장 건립 및 단지 조성에 관한 사항</u> 8. <u>(주)킨텍스 지도 및 감독에 관한 사항</u> 제9조(복지여성국에 두는 과) ① <u>복지여성국에 복지정책과, 찾아가는복지과, 여성가족과, 노인복지과, 장애인복지과, 아동청소년과를 둔다.</u> ② <u>복지여성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u> 1. <u>시민의 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u> 2. <u>저소득층 등 사회적 약자의 복지에 관한 사항</u> 3. <u>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에 관한 사항</u> 4. <u>여성상담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사항</u>	7. <u>경리 및 계약에 관한 사항</u> 8. <u>국·공유지 재산관리, 청사관리에 관한 사항</u> 제8조(일자리재정국에 두는 과) ① <u>일자리재정국----일자리정책과, 소상공인지원과, 세정과, 징수과-----.</u> ② <u>일자리재정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u> 1. <u>일자리창출, 일자리지원, 취업지원, 공공일자리, 노사협력에 관한 사항</u> 2. <u>청년의 일자리, 복지 등 지원에 관한 사항</u> 3. <u>지역경제,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u> 4. <u>소상공인 상생협력에 관한 사항</u> 5. <u>지방세정에 관한 사항</u> 6. <u>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 관한 사항</u> 제9조(사회복지국에 두는 과) ① <u>사회복지국에 복지정책과, 가족정책과, 노인복지과, 장애인복지과, 아동보육과를 둔다.</u> ② <u>사회복지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u> 1. <u>시민의 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u> 2. <u>저소득층 등 사회적 약자의 복지에 관한 사항</u> 3. <u>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에 관한 사항</u> 4. <u>여성상담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사항</u> 5. <u>다문화 가족과 구성원들의 권익보호</u>

현행	개정안
5. 다문화 가족과 구성원들의 권익보호와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6. 여성인력 개발과 취업 알선에 관한 사항 7. 노인 복지에 관한 사항 8. 장애인 복지에 관한 사항 9. 보육, 청소년 및 아동복지에 관한 사항 제10조(기후환경국에 두는 과) ①~② (생략) 1. (생략) 2. 기후환경, 대기환경, 신재생에너지, 에너지산업에 관한 사항 3.~5. (생략) 제12조(도시교통정책실에 두는 과) ① 도시교통정책실에 도시계획정책관, 도시정비과, 철도교통과, 버스정책과, 주차교통과, 도로정책과를 둔다. ② 도시교통정책실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도시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도시계획에 관한 검토·기획·지도 및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3. 수도권정비계획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 4.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관한 사항 5. 교통체계관리 개선사업 및 지능형교통시스템에 관한 사항 6. 도시 교통정비계획 수립, 교통시설에 관한 사항 7. 철도(일반·광역) 업무에 관한 사항 8. 버스정책 및 운영에 관한 사항 9. 공영주차장 조성, 공유주차에 관한 사항 10. 교통지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택시 및 화물운수에 관한 사항	와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6. 여성인력 개발과 취업 알선에 관한 사항 7. 청소년에 관한 사항 8. 노인 복지에 관한 사항 9. 장애인 복지에 관한 사항 10. 아동보육, 아동복지, 아동보호에 관한 사항 제10조(기후환경국에 두는 과) ①~② (생략) 1. (현행과 같음) 2. ----- 에너지산업, 친환경이동수단----- 3.~5. (현행과 같음) 제12조(도시주택정책실에 두는 과) ① 도시주택정책실에 도시계획정책관, 주택과, 건축과, 토지정보과, 스마트시티과를 둔다. ② 도시주택정책실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도시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도시계획에 관한 검토·기획·지도 및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3.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관한 사항 4.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사항 5. 주거복지에 관한 사항 6. 일반주택 건축, 건축물 안전·유지관리 및 광고물에 관한 사항 7. 지적 및 도로명 주소에 관한 사항 8. 스마트도시 조성 업무에 관한 사항

현행	개정안
11. 도로건설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제13조(시민안전주택국에 두는 과) ① 시민안전주택국에 시민안전과, 재난대응과, 주택과, 건축디자인과, 토지정보과를 둔다. ② 시민안전주택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안전정책 총괄·조정, 안전문화운동에 관한 사항 2. 안전점검, 민방위, 시민안전센터(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3. 재난상황관리, 비상대비 등 재난재해 예방대책 수립 및 시행 4. 지하안전관리 업무에 관한 사항 5. 주택정책 수립, 주거안정 정책에 관한 사항 6.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사항 7. 주거복지에 관한 사항 8. 일반주택 건축, 건축물 안전·유지관리 및 광고물에 관한 사항 9. 도시경관 및 공공디자인에 관한 사항 10. 지적 및 도로명 주소에 관한 사항 <신 설>	제13조(자족도시실현국에 두는 과) ① 자족도시실현국에 경제자유구역추진과, 기업지원과, 전략산업과, 미래산업과를 둔다. ② 자족도시실현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경제자유구역 지정 추진, 기업유치, 테크노밸리 조성에 관한 사항 2. 기업지원, 지식산업센터 및 공장등록, 창업지원에 관한 사항 3. 신성장산업, 마이스산업, 킨텍스 지도 및 감독에 관한 사항 4. 4차산업, 방송영상산업, 콘텐츠산업, 드론산업에 관한 사항 제14조(교통국에 두는 과) ① 교통국에 교통정책과, 버스정책과, 주차교통과, 도로정책과를 둔다. ② 교통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교통 체계 관리 개선 사업 및 지능형 교통 시스템에 관한 사항 2. 도시 교통 정비 계획 수립, 교통 시설에 관한 사항 3. 철도(일반·광역) 업무에 관한 사항 4. 버스 정책 및 운영에 관한 사항

현행	개정안
<u>제14조(도시균형개발국에 두는 과) ① 도시균형개발국에 도시균형개발과, 도시재생과, 재정비관리과를 둔다.</u> <u>② 도시균형개발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u> 1. <u>시 도시균형개발 중장기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u> 2. <u>고양 테크노밸리 조성사업에 관한 사항</u> 3. <u>스마트도시 조성 업무에 관한 사항</u> 4. <u>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 및 도시재생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u> 5. <삭 제> 6. <u>도시·주거환경정비에 관한 사항</u>	<u>5. 공영주차장 조성, 공유주차에 관한 사항</u> <u>6. 교통지도,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 택시 및 화물운수에 관한 사항</u> <u>7. 도로 건설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u> <u>제15조(도시혁신국에 두는 과) ① 도시혁신국에 신도시정비과, 도시정비과, 도시개발과를 둔다.</u> <u>② 도시혁신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u> 1. <u>신도시 정비에 관한 사항</u> 2. <u>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재건축, 재개발에 관한 사항</u> 3. <u>도시개발, 택지개발, 공공개발에 관한 사항</u>
<u>제15조(설치) ① (생략)</u> <u>② 「지역보건법」 제13조 및 제1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라 보건지소와 건강생활지원센터를 둔다.</u> <u>③ (생략)</u>	<u>제16조(설치) ① (현행 제15조제1항과 같음)</u> <u>② -----시행령 제10조 및 제11조-----</u> <u>--.</u> <u>③ (현행 제15조제3항과 같음)</u>
<u>제16조(소장) (생략)</u> <u>제17조(보건소에 두는 과) 덕양구보건소에 보건정책과, 질병관리과를 두고, 일산동구보건소 및 일산서구보건소에 각각 보건행정과를 둔다.</u>	<u>제17조(소장) (현행 제16조와 같음)</u> <u>제18조(보건소에 두는 과) 덕양구보건소, 일산동구보건소 및 일산서구보건소에 각각 보건행정과와 건강증진과를 둔다.</u>
<u>제18조(소관사무) (생략)</u> <u>제19조(설치) (생략)</u>	<u>제19조(소관사무) (현행 제18조와 같음)</u> <u>제20조(설치) (현행 제19조와 같음)</u>

현행	개정안
<u>제20조(소장)</u> (생략)	<u>제21조(소장)</u> (현행 제20조와 같음)
<u>제21조(농업기술센터에 두는 과)</u> (생략)	<u>제22조(농업기술센터에 두는 과)</u> (현행 제21조와 같음)
<u>제22조(소관사무)</u> (생략)	<u>제23조(소관사무)</u> (현행 제22조와 같음)
<u>제23조(설치)</u> (생략)	<u>제24조(설치)</u> (현행 제23조와 같음)
<u>제24조(사업소의 장)</u> (생략)	<u>제25조(사업소의 장)</u> (현행 제24조와 같음)
<u>제25조(사업소에 두는 과)</u> (생략) - 고양시 푸른도시사업소: 녹지과, 공원관리과, 생태하천과 ~3. (생략) - 고양시 도로관리사업소: 공사과, 도로관리과, 차량등록과	<u>제26조(사업소에 두는 과)</u> (현행 제25조와 같음) -----<u>덕양공원관리과, 일산공원관리과</u>----- ~3. (현행 제25조제2호 및 제3호와 같음) ----<u>도로건설사업소</u>-----
<u>제26조(소관사무)</u> (생략) (생략) - 가.~라. (생략) 마. <u>도시근린공원</u> 내 시설물의 설치 및 유지 관리 - 바.~아. (생략) ~3. (생략) - 고양시 <u>도로관리사업소</u> - 가.~마. (생략)	<u>제27조(소관사무)</u> (현행 제26조와 같음) (현행 제26조제1호와 같음) - 가.~라. (현행 제26조제1호가목부터 라목까지와 같음) 마. <u>공원</u>----- - 바.~아. (현행 제26조제1호바목부터 아목까지와 같음) ~3. (현행 제26조제2호 및 제3호와 같음) -----<u>도로건설사업소</u> - 가.~마. (현행 제26조제4호 각 목과 같음)
<u>제27조(설치)</u> (생략)	<u>제28조(설치)</u> (현행 제27조와 같음)
<u>제28조(구청장)</u> ① <u>제27조</u> 에 따라 설치된 구에 구청장을 둔다. ② (생략)	<u>제29조(구청장)</u> ① <u>제28조</u> ----- ② (현행 제28조제2항과 같음)
<u>제29조(구에 두는 과)</u> (생략)	<u>제30조(구에 두는 과)</u> ① (현행 제29조 제 목 외의 부분과 같음)

현행	개정안
<u>〈신 설〉</u> <u>제30조(설치)</u> (생략) <u>제31조(직무)</u> (생략) <u>제32조(동장)</u> (생략) <u>제33조(정원의 총수)</u> 시에 두는 정원의 총수는 <u>3,403명</u>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집행기관: <u>3,346명</u> 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u>57명</u>	<u>② 덕양구에는 구청장을 보좌하는 대민협력관을 둔다.</u> <u>제31조(설치)</u> (현행 제30조와 같음) <u>제32조(직무)</u> (현행 제31조와 같음) <u>제33조(동장)</u> (현행 제32조와 같음) <u>제34조(정원의 총수)</u> ----- -----<u>3,444명</u>----- -----. 1. -----<u>3,378명</u> 2. -----<u>66명</u>

현행	개정안																				
[별표 2]	[별표 2]																				
<u>사업소의 명칭 및 위치(제23조 관련)</u>	<u>사업소의 명칭 및 위치(제24조 관련)</u>																				
<table> <tr> <th>사업소명</th><th>위 치</th></tr> <tr> <td>고양시 푸른도시사업소</td><td>(생 략)</td></tr> <tr> <td>고양시 도서관센터</td><td>(생 략)</td></tr> <tr> <td>고양시 상하수도사업소</td><td>(생 략)</td></tr> <tr> <td>고양시 <u>도로관리사업소</u></td><td>(생 략)</td></tr> </table>	사업소명	위 치	고양시 푸른도시사업소	(생 략)	고양시 도서관센터	(생 략)	고양시 상하수도사업소	(생 략)	고양시 <u>도로관리사업소</u>	(생 략)	<table> <tr> <th>사업소명</th><th>위 치</th></tr> <tr> <td>고양시 푸른도시사업소</td><td>(현행과 같음)</td></tr> <tr> <td>고양시 도서관센터</td><td>(현행과 같음)</td></tr> <tr> <td>고양시 상하수도사업소</td><td>(현행과 같음)</td></tr> <tr> <td>고양시 <u>도로건설사업소</u></td><td>(현행과 같음)</td></tr> </table>	사업소명	위 치	고양시 푸른도시사업소	(현행과 같음)	고양시 도서관센터	(현행과 같음)	고양시 상하수도사업소	(현행과 같음)	고양시 <u>도로건설사업소</u>	(현행과 같음)
사업소명	위 치																				
고양시 푸른도시사업소	(생 략)																				
고양시 도서관센터	(생 략)																				
고양시 상하수도사업소	(생 략)																				
고양시 <u>도로관리사업소</u>	(생 략)																				
사업소명	위 치																				
고양시 푸른도시사업소	(현행과 같음)																				
고양시 도서관센터	(현행과 같음)																				
고양시 상하수도사업소	(현행과 같음)																				
고양시 <u>도로건설사업소</u>	(현행과 같음)																				

[별표 6]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제35조 관련)

(단위 : 명)

직급별		합계	본청	의회	직속기관	사업소	구	동
합계		3,403	-					
정무직	소계	1	-					
	시장	1	1	-	-	-	-	-
일반직	소계	3,368	-					
	2급	2	2	-	-	-	-	-
	3.4급	4	2	1	-	-	1	-
	4급	16	7	-	3	4	2	-
	4.5급	3	3	-	-	-	-	-
	5급	150	47	5	9	12	33	44
	6급 이하	3,189	-					
	전문경력관 소계	4	-					
별정직	소계	5	5	-	-	-	-	-
	5급 상당	1	1	-	-	-	-	-
	6급상당 이하	4	4	-	-	-	-	-
지도직	소계	20	-					
	지도관	3	-	-	3	-	-	-
	지도사	17	-					
연구직	소계	9	-					
	연구사	9	-					

[별표 6]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제36조 관련)

(단위 : 명)

직급별		합계	본청	의회	직속기관	사업소	구	동
합계		3,444	-					
정무직	소계	1	-					
	시장	1	1	-	-	-	-	-
일반직	소계	3,409	-					
	2급	2	2	-	-	-	-	-
	3.4급	4	2	1	-	-	1	-
	4급	17	8	-	3	4	2	-
	4.5급	4	3	-	-	-	1	-
	5급	152	46	5	11	13	33	44
	6급 이하	3,226	-					
	전문경력관 소계	4	-					
별정직	소계	5	5	-	-	-	-	-
	5급 상당	1	1	-	-	-	-	-
	6급상당 이하	4	4	-	-	-	-	-
지도직	소계	20	-					
	지도관	3	-	-	3	-	-	-
	지도사	17	-					
연구직	소계	9	-					
	연구사	9	-					

[별표 7]

한시정원의 직급 및 운영시한(제37조 관련)

관 리 기관별	소속부서	구분		정원 (명)	운영시한	비고
		직종	직급			
<u><신 설></u>						
본청	<u>도시균형개발국</u> <u>도시균형개발과</u>	일반직 (1)	4급	1	<u>2024.12.31.</u>	

[별표 7]

한시정원의 직급 및 운영시한(제38조 관련)

관 리 기관별	소속부서	구분		정원 (명)	운영시한	비고
		직종	직급			
본청	<u>자족도시실현국</u> <u>경제자유구역</u> <u>추진과</u>	일반직 (1)	4급	1	<u>2024.12.31.</u>	
본청	<u>도시혁신국</u> <u>신도시정비과</u>	일반직 (1)	4급	1	<u>2025.12.31.</u>	

고양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우리시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고양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부터 제9조까지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1일

고 양 시 장

1. 자치법규명 : 고양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민선8기 조직개편에 따라 부서별 위임사무를 정비하고, 상위법령 등 근거법규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민선8기 조직개편에 따라 부서 순서를 직제 순으로 조정함(안 별표 1 및 별표 2).
 - 부서 간 조정에 따른 위임사무 내용 및 근거법규를 정비함(안 별표 1 및 별표 2).
 - 인용 법령 및 용어 등을 현행화함(안 별표 1 및 별표 2).
4. 자치법규안 : 별첨
5.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6.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2년 11월 7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인터넷 등

다. 기재내용 : 주소·성명·연락전화번호·의견

라. 제출기관 : 고양시장(기획정책관)

- 주 소 :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0(주교동)
- 전 화 : 기획정책관 조직제안팀 (031-8075-2395)
- 팩 스 : 031-8075-4901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고양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규칙안 내용	의견	비고

고양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양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및 별표 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3년 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기획정책관
입안자	정책관 성명	기획정책관 최현석
	팀장 성명	조직제안팀장 김문식
	담당자 성명·전화	이홍규 (031-8075-2395)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제2조 관련)

[도시디자인담당관]

위 임 사 무 명	단 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1. 옥외광고물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광고물 등의 표시 또는 설치 관련 허가·신고 및 간판표시계획서 제출에 관한 사항(공공기관의 공공 목적 광고물을 포함한다) 2. 허가 및 신고사항의 변경과 기간연장 등에 관한 사항 3. 광고물 등의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4.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 5. 옥외광고물 등의 허가·신고의 취소 6. 허가, 신고, 안전점검에 따른 수수료의 징수에 관한 사항 7. 옥외광고사업의 등록, 취소, 영업정지 및 변경, 휴업 등 신고에 관한 사항 8. 옥외광고사업 손해배상 책임보험의무가입에 대한 관리 및 조치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 제6조 · 같은 법 시행령 제4조부터 제8조까지, 제23조, 제29조 · 같은 법 제3조 ·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10조 · 같은 법 제9조 ·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 같은 법 제10조, 제10조의2, 제10조의3, 제20조 ·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부터 제43조까지, 제55조 · 같은 법 제13조 · 같은 법 제17조 · 같은 법 제11조, 제14조 ·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부터 제47조까지, 제51조부터 제53조까지 · 같은 법 제10조의4, ·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2, 제55조

[감사관]

위 임 사 무 명	단 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1. 구 및 동 감사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자체 감사계획 수립 및 시행 2. 소속 공무원의 주의요구(경고 · 훈계·주의) 처분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19조 • 「고양시 감사 규칙」 제21조

[시민안전담당관]

위 임 사 무 명	단 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1. 민방위 편성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민방위대 조직·편성 및 민방위대 운용에 관한 동장 지휘·감독 권한 2. 직장민방위대 편성, 개편, 해체, 이전, 명의변경 3. 민방위 기술지원대 편성 및 결과 보고	· 「민방위기본법」 제18조, 제19조, 제21조 ·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 ·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 「민방위기본법」 제21조
2. 민방위대 지휘 감독에 대한 다음의 권한	1. 관내 직장민방위 대장의 감독 2. 민방위대에 대한 정기검열 및 결과 보고	·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3. 민방위 교육 및 훈련	1. 직장민방위 대원의 교육 통지서작성 및 전달 2. 직장민방위 대원 및 기술 지원대의 교육훈련 면제 대상자 승인, 교육 불참자 조치	·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
4. 민방위 관련 과태료 부과	1. 민방위대 신고의무 및 교육·훈련의무 위반자 과태료 부과·징수	· 같은 법 제39조

[재난대응담당관]

위 임 사 무 명	단 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다음의 권한	1. 진화, 수방, 지진방재 그 밖의 응급조치와 구호 2. 피해시설의 응급 복구 및 그 밖의 질서유지 3. 재난의 발생을 예방하거나, 경감하기 위한 필요사항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7조
2. 우수유출저감시설에 관한 사항	1. 우수유출저감시설 유지 관리	• 「자연재해대책법」 제19조 •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행정지원과]

위 임 사 무 명	단 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1. 소속 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다음의 권한 2. 청원경찰 배치	1. 연가계획 및 허가 2. 병가 및 공가 허가 1. 청원경찰 근무부서 배치	• 「고양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17조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5, 제7조의6 •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6조

[인적자원과]

위 임 사 무 명	단 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1. 6급 이하 공무원에 대한 다음의 권한	1. 6급 공무원에 대한 보직, 전보 (구간 전보 제외) 2. 7급 이하 공무원에 대한 보직, 전보, 승급, 휴직, 복직, 면직, 징계(다만, 구간 전보 및 6급과 동일 건으로 관련된 7급 이하의 징계, 구를 달리하는 7급 이하의 징계는 제외)	• 「지방공무원법」 제6조 • 같은 법 제6조

[민원여권과]

위 임 사 무 명	단 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1. 주민등록업무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회수 주민등록증 파기	·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4조
2. 행정사 업무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행정사 업무(변경) 신고	· 「행정사법」 제10조 ·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2. 행정사업의(휴업·폐업·재개업) 신고	· 같은 법 제16조, 제17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3. 합동사무소, 분사무소 설치 및 사무소 이전 신고	· 같은 법 제10조, 제14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1조
	4. 행정사업의 지도·감독	· 같은 법 제31조부터 제33조까지
	5. 과태료 부과·징수	· 같은 법 제38조

[일자리정책과]

위 임 사 무 명	단 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1. 국내 유료직업 소개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 및 변경등록 2.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 폐업신고 3.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의 사업정지 및 등록취소 4.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 사업현황 보고 5.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 지도·단속 및 보고 6.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 과태료 부과·징수	• 「직업안정법」 제19조 • 같은 법 제35조 • 같은 법 제36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 • 같은 법 제50조

[소상공인지원과]

위 임 사 무 명	단 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1. 담배 소매인 지정 및 취소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담배 소매인의 지정 2. 담배 소매인의 지정 취소 3. 담배 소매인 영업소의 위치변경 4. 담배 소매업의 휴·폐업 등의 신고	· 「담배사업법」 제16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 같은 법 제1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 같은 법 제22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2. 방문판매·전화권유판매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방문판매·전화권유판매업 신고 (신고, 변경, 휴·폐업 등) 2. 시정권고 및 과태료 부과 3. 직권말소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 같은 법 제48조, 제66조 · 같은 법 제12조

[세정과]

위 임 사 무 명	단 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1. 개별주택가격 조사 및 가격산정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개별주택 특성조사 및 가격산정 2. 개별주택가격 검증 3. 주택소유자 등의 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청취 4. 주택소유자 등의 이의신청 접수·재조사 및 가격 산정 5. 개별·공동 주택가격 확인서 발급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7조 •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35조 •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 같은 법 제17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제17조

[복지정책과]

위 임 사 무 명	단 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1. 생활보장에 관한다음의 권한	1. 기초생활수급자 조사보고 2. 기초생활수급자 급여(생계, 교육, 장제, 해산) 지급 3. 보장비용의 징수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2조, 제23조 · 같은 법 제9조 및 제12조, 제12조의2, 제13조, 제14조 ·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16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제7조, 제17조, 제18조 · 같은 법 제46조
2. 의료급여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의료급여수급권자 자격 및 사후관리 2. 의료급여증 발급 및 변경, 재발급 3.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징수, 대불 및 대지급금 상환·독촉 4. 본인부담 급여	·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3조 ·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12조 · 「의료급여법」 제23조 · 같은 법 제12조, 제13조
3.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및 지원	1.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활동 지원 등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4. 긴급지원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긴급지원대상자 신청·접수 및 사후조사 실시 2. 긴급지원대상자 급여(생계, 의료, 주거, 사회복지시설이용, 교육, 연료, 해산, 장제, 전기요금) 지급 및 보장비용의 환수	· 「긴급복지지원법」 제4조, 제8조, 제13조 ·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8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제8조 · 「긴급복지지원법」 제9조, 제15조 · 같은 법 시행령 제2조부터 제6조까지 ·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3
5. 노숙인 등의 처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노숙인 등의 응급조치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6. 국민기초생활보장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기초생활수급자 조사(자활) 보고 2. 기초생활수급자 급여(자활) 지급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2조 및 제23조 · 같은 법 제15조 · 같은 법 제27조 ·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가족정책과]

위 임 사 무 명	단 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1. 한부모가족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한부모가족 조사보고 2.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급 3. 부정수급자에 대한 비용의 징수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0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2조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25조의2 •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노인복지과]

위 임 사 무 명	단 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1. 노인복지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노인건강진단 실시 2. 경로사업(기초생활보장노인 월동난방비지원 등)의 실시 지원 3.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설치·변경·휴지·폐지 신고 및 사업정지 등 명령 (노인복지관 업무 제외) 4. 기초연금(미지급연금 포함)지급 및 부당이득 환수(승인, 결정 사항 제외) 5. 효수당 지급 및 변경, 부당이득 환수	· 「노인복지법」 제27조 · 같은 법 제4조 · 같은 법 제37조제2항, 제40조제3항, 제43조제2항 ·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 「기초연금법」 제14조, 제15조, 제19조 · 「고양시 「효」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제6조
2. 장례식장 영업의 신고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장례식장 영업의 신고(변경, 폐업), 사업자 등록 현황 자료 유지·관리 2. 장례식장 영업에 대한 정비, 제한명령 및 시정명령 권한 3. 장례식장 행정 처분에 관한 권한 4. 장례식장에 대한 검사 및 보고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제20조의4 · 같은 법 제30조, 제32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 같은 법 제32조, 제33조, 제35조, 제39조부터 제42조까지 ·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39조, 제41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 제24조 · 같은 법 제37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제2항

위 임 사 무 명	단 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3.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음의 권한	1. 무연고시체 등의 처리	· 같은 법 제12조 ·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4. 노인의료 복지시설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노인의료복지시설 변경·폐지 등 2. 노인의료복지시설 감독 3. 노인의료복지시설 사업 정지 등 4. 청문 5. 과태료	· 「노인복지법」 제40조 · 같은 법 제42조 · 같은 법 제43조 · 같은 법 제44조 · 같은 법 제61조의2
5. 재가노인 복지시설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재가노인복지시설 변경·폐지 등 2. 재가노인복지시설 감독 3. 재가노인복지시설 사업 정지 등 4. 청문 5. 과태료	· 「노인복지법」 제40조 · 같은 법 제42조 · 같은 법 제43조 · 같은 법 제44조 · 같은 법 제61조의2
6. 장기요양기관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장기요양기관의 변경 및 갱신 2. 장기요양기관 폐업 등 3. 장기요양기관 보고 및 검사 4. 청문 5. 장기요양기관 지정의 취소 등 처분 6. 과태료 7. 과징금 8. 기초수급자 및 의료급여수급권자 장기요양기관 입소(이용)승인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2조의4, 제33조 · 같은 법 제36조 · 같은 법 제61조 · 같은 법 제63조 · 같은 법 제37조 · 같은 법 제69조 · 같은 법 제37조의2 ·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7. 노인주거복지시설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노인주거복지시설의 변경·폐지 2. 노인주거복지시설의 감독 3.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정지 등 4. 청문 5. 과태료	· 「노인복지법」 제40조 · 같은 법 제42조 · 같은 법 제43조 · 같은 법 제44조 · 같은 법 제61조의2

[장애인복지과]

위 임 사 무 명	단 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1. 장애인 보호관리	1.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2.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장애인 보장급여(장애수당, 도비 장애수당, 장애 아동부양수당, 장애인자녀교육비, 장애인 가구 월동난방비)지급 3.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위반차량 단속 및 과태료 부과, 체납처분	· 「장애인복지법」 제41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 · 같은 법 제6조, 제38조, 제49조, 제50조 ·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부터 제33조까지 ·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부터 제25조까지, 제38조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7조 ·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아동보육과]

위 임 사 무 명	단 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1. 아동복지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아동 등에 대한 조사 2.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등의 지원 3.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지원 4. 보조금의 반환명령 5. 아동수당에 관한 조사, 질문, 지급, 정지, 환수, 과태료 부과·징수, 고발 등	• 「아동복지법」 제66조 • 「입양특례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10조 • 「아동복지법」 제59조 • 「아동복지법」 제61조 • 「아동수당법」 제7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6조, 제17조, 제24조, 제26조 등
2. 보육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어린이집에 관한 다음의 사항 (국공립어린이집 제외) - 어린이집 인가에 관한 사항 (설치·변경인가 등) - 보육교직원 임면에 관한 사항 - 어린이집 비용의 보조 등 - 어린이집 비용 및 보조금의 반환명령 - 어린이집 지도와 명령 - 어린이집 보고와 검사 - 어린이집의 폐지·휴지 등 신고 - 어린이집 지정 또는 변경 명령 - 어린이집의 폐쇄 등 (원장 또는 보육교사 자격정지 및 자격취소,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2. 보육료 및 가정양육수당 지원에 관한 사항	• 「영유아보육법」 제13조 • 같은 법 제19조 • 같은 법 제36조 • 같은 법 제40조 • 같은 법 제41조 • 같은 법 제42조 • 같은 법 제43조 • 같은 법 제44조 • 같은 법 제45조, 제46조, 제47조, 제48조, 제5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 • 같은 법 제34조

위 임 사 무 명	단 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3. 결식아동 급식지원에 관한 다음의 권한 4. 어린이집 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다음의 사항	- 보육료 자격 책정 및 관리 - 가정양육수당 자격 책정 및 관리 - 보육료 및 가정양육수당 지원 1. 아동급식협력업체 지정 및 관리 2. 급식비 지원 및 정산 3. 급식업체(지역아동센터 포함) 지도점검 1. 안전진단 결과에 따른 철거명령 등 2. 사고조사 등 3. 보고·검사 등 4. 과태료 부과·징수	· 「아동복지법」 제68조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56조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6조 · 같은 법 제22조 · 같은 법 제23조 · 같은 법 제31조

[환경정책과]

위 임 사 무 명	단 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1. 「토양환경보전법」 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 2. 타인 토지에의 출입 등 3. 손실보상 4. 토양오염 유발시설의 신고 5. 토양오염 검사의 통보 등 6. 토지이용 등의 제한 7. 명령 불이행자의 대집행 8. 과태료 부과·징수	• 「토양환경보전법」 제7조 • 같은 법 제8조 • 같은 법 제9조 • 같은 법 제11조 • 같은 법 제13조 • 같은 법 제20조 • 같은 법 제24조 • 같은 법 제32조

[기후에너지과]

위 임 사 무 명	단 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1. 「악취방지법」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악취배출시설의 설치·운영 신고 2. 신고대상시설 운영자에 대한 개선명령 3. 신고대상시설 운영자에 대한 조업정지명령 4. 신고대상시설 운영자에 대한 과징금처분 5. 신고대상시설 운영자에 대한 사용중지명령 및 폐쇄명령 6. 악취관리지역 외의 악취배출시설 운영자에 대한 개선권고 및 개선권고 미이행에 따른 조치명령 7. 조치명령 미이행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	•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제9조 • 「악취방지법」 제10조 • 같은 법 제11조 • 같은 법 제12조 • 같은 법 제13조 • 같은 법 제14조 • 같은 법 제30조
2.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 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생활소음·진동 관련 방음·방진시설의 설치 등의 조치명령 2. 폭약사용의 필요사항에 따른 조치명령 3. 교통소음 및 진동규제 지역 내의 자동차운행 규제 요청 4. 교통소음·진동규제지역 내의 방음시설 설치 요청 5. 운행차의 수시점검, 면제, 원인의 소명 6. 운행차의 개선 및 사용정지	• 「소음·진동관리법」 제23조 • 「소음·진동관리법」 제25조 • 「소음·진동관리법」 제28조 • 「소음·진동관리법」 제29조 • 「대기환경보전법」 제61조 • 「소음·진동관리법」 제36조 • 「대기환경보전법」 제70조

위 임 사 무 명	단 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명령·통행규제 7. 과태료 부과·징수 8. 특정공사 사전 신고 9. 이동소음원에 대한 규제 10. 배출가스 전문정비사업자의 등록	· 「소음·진동관리법」 제38조 · 「대기환경보전법」 제94조 · 「소음·진동관리법」 제60조 · 「소음·진동관리법」 제22조 · 「소음·진동관리법」 제24조 · 「대기환경보전법」 제68조
3.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른 권한	1.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에 대한 지도점검 및 과태료 처분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3조, 제34조, 제44조, 제48조, 제57조 및 제70조부터 제73조까지
4.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다음의 권한	1. 특정 고압가스 사용신고 수리 2. 고압가스사용시설에 대한 지도 점검 및 과태료 처분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0조 · 같은 법 제15조, 제23조부터 제25조까지, 제41조부터 제43조까지
5.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다음의 권한	1. 도시가스 특정 사용시설에 대한 지도·점검	· 「도시가스사업법」 제27조, 제29조

[자원순환과]

위 임 사 무 명	단 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1. 폐기물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쓰레기규격봉투 제작, 관리 및 공급 (공공용쓰레기규격봉투에 한한다) 2. 쓰레기규격봉투 판매소 지정 및 취소 3. 폐기물관련 각종 수수료 부과·징수 4. 폐기물 불법행위 적발 및 처리 5.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 업무 6. 사업장폐기물의 처리 7. 폐기물 다량 배출자 신고 수리 8. 생활폐기물의 처리 (보행자전용도로를 포함한 가로청소에 한한다)	· 「고양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16조, 제17조 · 같은 조례 제17조 · 같은 조례 제18조, 제19조 · 같은 조례 제21조부터 제27조까지 · 「폐기물관리법」 제17조 · 같은 법 제18조 · 「고양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8조 · 「폐기물관리법」 제14조
2.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추진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포장폐기물 등의 발생 억제를 위한 조치명령 등 2. 제품의 포장방법 및 포장재의 재질에 관한 검사명령 3. 폐기물배출자의 분리 보관 등 필요한 조치명령 4.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를 위한 보관 시설이나 용기 설치 등 필요한 조치 5. 빈용기의 재사용 촉진 6. 보고 및 검사 등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 · 같은 법 제9조제3항 · 같은 법 제12조의3 · 같은 법 제13조 · 같은 법 제15조의2 · 같은 법 제36조

위 임 사 무 명	단 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3. 음식물류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에 관한 다음의 권한 4. 공중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권한	7. 재활용 위반행위 적발 및 처리 1. 감량 의무사업장 신고 2.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1. 공중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재산관리관이 지정된 공중화장실 제외) 2. 개방화장실 지정 3. 보조금 지급 4. 보고 등	· 같은 법 제39조부터 제41조까지 · 「고양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제8조 · 같은 조례 제19조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8조 · 같은 법 제9조 ·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 같은 법 제16조 · 같은 법 제19조

[식품안전과]

위 임 사 무 명	단 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1. 식품접객업 (유통주점, 단란주점) 영업허가에 관한 사항	1. 영업허가 신청 2. 허가사항 변경(허가신청, 신고) 3.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4. 폐업신고	· 「식품위생법」 제37조제1항 ·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제1항 · 같은 법 제37조제1항 및 제3항 ·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 · 같은 법 제39조제3항 ·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제1항 · 같은 법 제37조제3항 ·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2. 그 밖에 식품위생업 중 시장에 대한 영업신고에 관한 사항 (다만,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 공업은 제외)	1. 영업신고 2. 변경신고 3.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4. 폐업신고	· 「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 ·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 · 같은 법 제37조제4항 ·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제1항 · 같은 법 제39조제3항 ·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제1항 · 같은 법 제37조제4항 ·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3. 집단급식소에 관한 사항	1. 집단급식소 설치·운영 신고 2. 집단급식소 설치·운영 신고사항 변경신고 3. 집단급식소 설치·운영 종료 신고	· 「식품위생법」 제88조제1항 · 같은 법 시행규칙 제94조제1항 · 같은 법 제88조제1항 · 같은 법 시행규칙 제94조제7항 · 같은 법 제88조제6항 · 같은 법 시행규칙 제94조제9항

위 임 사 무 명	단 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4. 제1호부터 제2호까지의 허가, 신고 대상 식품위생영업에 대한 다음의 권한	4. 집단급식소 지도·단속 5. 행정처분, 청문, 과징금, 과태료 등 1. 식품위생영업소 지도·단속(정기 및 수시의 출입·검사·수거 등) 2. 식품위생영업소에 대한 행정처분(시정명령, 폐기처분, 공표, 개수명령, 허가의 취소, 폐쇄명령 및 폐쇄조치, 청문 등) 3. 과징금·과태료 처분 4. 부정·불량 식품의 지도·단속 5. 무허가·신고 식품영업(퇴폐, 변태 등)행위의 단속	· 같은 법 제22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 · 같은 법 제71조부터 제75조까지, 제78조부터 제84조까지, 제93조부터 제97조까지, 제101조, 제102조 · 「식품위생법」 제22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 · 같은 법 제71조부터 제75조까지, 제78조부터 제84조까지, 제93조부터 제98조까지 · 같은 법 제101조, 제102조 · 같은 법 제4조 · 같은 법 제79조
5. 그 밖에 식중독 등 식품위생 관련 추진업무	1. 식중독 발생 관리 및 음식문화개선(모범음식점) 등 각종 시책 관련 업무	· 「식품위생법」 제47조, 제86조, 제89조 ·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제61조, 제62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 제93조
6. 공중위생영업 영업신고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영업 신고 및 폐업신고 2.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부터 제3조의3까지 · 같은 법 제3조의2 ·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5

위 임 사 무 명	단 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7. 공중위생영업 위생지도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공중위생영업소 지도·단속 (보고 및 출입·검사)	· 「공중위생관리법」 제9조
8. 공중위생영업 행정처분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위생지도 및 개선명령 2. 공중위생영업소의 폐쇄 등	· 「공중위생관리법」 제10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 · 같은 법 제11조, 제11조의2, 제11조의6
9. 공중이용시설에 관한 다음의 권한	3. 벌칙 4. 과태료 1. 공중이용시설의 개선명령 및 이행확인	· 같은 법 제20조 · 같은 법 제22조 · 「공중위생관리법」 제10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
10. 공중위생영업소 위생서비스수준 평가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위생서비스수준 평가 2. 위생관리등급 공표	· 「공중위생관리법」 제13조 · 같은 법 제14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11. 위생용품제조업, 위생물수건처리 업 영업신고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영업신고 2. 휴업·폐업 및 재개업 신고 3.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 「위생용품 관리법」 제3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부터 제6조까지 · 같은 법 제4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 같은 법 제6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12. 위생용품제조업, 위생물수건처리 업 위생지도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위생용품제조업, 위생물수건처리업 지도·단속(출입·검사·수거 등)	· 「위생용품관리법」 제14조 ·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
13. 위생용품제조업, 위생물수건처리	1. 시정명령 2. 폐기처분 등	· 「위생용품관리법」 제15조 · 「위생용품관리법」 제16조

위 임 사 무 명	단 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업 행정처분에 관한 다음의 권한	3. 영업정지 또는 영업소 폐쇄 4. 품목 등 제조정지 5. 폐쇄조치 등 6. 과징금 처분 7. 위반사실 공표 8. 벌칙 9. 과태료	·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 「위생용품관리법」 제17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 「위생용품관리법」 제18조 · 「위생용품관리법」 제19조 · 「위생용품관리법」 제22조 ·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 「위생용품관리법」 제23조 ·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 「위생용품관리법」 제32조 · 「위생용품관리법」 제34조 · 「위생용품관리법」 제27조
14. 소비자위생용품 위생감시원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소비자위생용품위생감시원 위·해촉 등 관리	
15. 식품표시 광고법 위반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유통 가공식품 및 식품위생업소(다만,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은 제외)에 대한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 지도·단속 2. 부당한 표시행위 및 광고에 대한 행정처분(시정명령, 회수 및 폐기처분, 영업정지 등, 청문) 3. 과징금·과태료 처분 4. 벌칙 5. 위반사실 공표	·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 · 같은 법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제23조 · 같은 법 제19조, 제20조, 제31조 · 같은 법 제26조부터 제29조까지 · 같은 법 제21조

[문화예술과]

위 임 사 무 명	단 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1. 공연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공연장업의 등록(변경) 및 등록증의 재교부 2. 재해예방 조치 3. 무대시설의 안전진단 등 4. 공연장 등에 관한 지도·감독 (공연자 또는 공연장의 감독, 폐기명령, 행정처분, 폐쇄조치, 중포휴대, 청문) 5. 벌칙(벌칙, 과태료, 양벌규정)	· 「공연법」 제9조 ·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 같은 법 제11조 ·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 같은 법 제12조 ·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 같은 법 제31조부터 제36조까지 · 같은 법 제40조부터 제43조까지
2. 출판사 및 인쇄사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출판사 및 인쇄사 신고, 신고사항 변경신고 2. 폐업 및 직권말소 3. 과태료 부과·징수	·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9조 ·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제12조 ·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11조 ·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제13조 ·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8조제1항제1호·제2호, 제2항제1호·제3호
3. 영화 및 비디오물 진흥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영화업자 신고, 변경신고 2. 영화업자 신고증 재교부 3. 영화상영관의 등록, 변경등록 4. 영화상영의 신고, 변경신고 5. 영화상영의 제한 6. 영화상영관의 영업정지 및 등록 취소 7. 영화상영관 영업 등의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 · 같은 법 제26조제3항 · 같은 법 제36조제1항 · 같은 법 제41조제1항 · 같은 법 제42조 · 같은 법 제45조 · 같은 법 제46조

위 임 사 무 명	단 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4.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다음 의 권한	승계신고	
	8. 비디오물제작업·배급업의 신고, 비디오물시청제공업의 등록, 신고증·등록증의 교부, 변경신고·변경등록	· 같은 법 제57조, 제58조, 제60조, 제61조
	9. 비디오물제작업자·배급업자 또는 비디오물시청제공업자의 영업지위승계 신고	· 같은 법 제63조
	10. 비디오물제작업·배급업 또는 비디오물시청제공업의 폐업신고 및 직권말소	· 같은 법 제64조
	11. 비디오물제작업자·배급업자, 비디오물시청제공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과징금 부과, 영업소 폐쇄 및 비디오물 수거 등 조치	· 같은 법 제67조, 제68조, 제70조
	12. 비디오물시청제공업자 교육 및 모범적인 비디오물시청제공업자에 대한 지원	· 같은 법 제88조, 제89조
	13. 수수료 책정	· 같은 법 제90조
	14. 과태료 부과·징수	· 같은 법 제98조, 제99조
	1. 게임물 관련사업자 교육, 모범 게임제공영업소 지정 및 지원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
	2. 게임제작업 또는 배급업 등록, 변경등록	· 같은 법 제25조
	3. 일반게임제공업, 청소년게임제공업 또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허가, 등록, 신고, 변경허가, 변경등록, 변경신고	· 같은 법 제26조
	4. 게임물 관련사업자에 대한 영업의 지위 승계신고.	· 같은 법 제29조
	5. 게임물 관련사업자에 대한 폐업	· 같은 법 제30조

위 임 사 무 명	단 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5.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다음의 권한	및 직권말소	
	6. 게임물 관련사업자에 대한 사후 관리	· 같은 법 제31조
	7. 게임물 관련사업자에 대한 영업 폐쇄 등 행정조치(영업정지, 허가·등록취소, 영업폐쇄, 과징금 부과, 청문)	· 같은 법 제35조, 제36조 및 제40조
	8. 게임물 관련사업자에 대한 폐쇄 및 수거 등 조치	· 같은 법 제38조
	9. 게임물 관련사업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	· 같은 법 제48조
	1.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
	2.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배급업,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신고	· 같은 법 제16조제1항·제2항
	3. 노래연습장업의 등록	· 같은 법 제18조
	4. 신고증·등록증 교부	· 같은 법 제20조
	5. 신고 또는 등록사항의 변경	· 같은 법 제21조
	6. 폐업 및 직권말소	· 같은 법 제24조
	7. 등록취소, 청문	· 같은 법 제27조, 제30조
	8. 과징금 부과·징수	· 같은 법 제28조
	9. 영업소폐쇄 및 음반등의 수거·폐기	· 같은 법 제29조
	10. 과태료 부과·징수	· 같은 법 제36조

[관광과]

위 임 사 무 명	단 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1. 유원시설업	1. 유원시설업 허가신청 2. 유원시설업 허가사항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3. 그 밖의 유원시설업 영업신고 4. 그 밖의 유원시설업 영업신고 사항 변경신고 5. 벌칙 6. 양벌규정	• 「관광진흥법」 제5조제2항 • 같은 법 제5조제3항 • 같은 법 제5조제4항 • 같은 법 제5조제4항 • 같은 법 제81조부터 제84조까지 • 같은 법 제85조

[체육정책과]

위 임 사 무 명	단 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1.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령상 신고 체육시설업에 대한 다음의 권한	1. 체육시설업의 (변경)신고 2. 체육시설 안전관리점검 3. 회원의 모집 및 보호 4. 시정명령 5. 행정처분 6. 청문 7. 시책 수립에 필요한 사항 등의 보고 8. 수수료 징수 9. 과태료 부과·징수 10. 휴업 또는 폐업통보 등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 ·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5 · 같은 법 제17조 · 같은 법 제30조 · 같은 법 제32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제3항 · 같은 법 제33조 · 같은 법 제36조 · 같은 법 제37조 · 같은 법 제40조 ·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 같은 법 제29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도시계획정책관]

위 임 사 무 명	단 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1. 토지이용계획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발급 등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0조 •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주택과]

위 임 사 무 명	단 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1.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공동주택의 관리방법 2.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규약 (입주자대표회의의 교육 제외) 3. 관리비 및 회계운영 4. 시설 관리(행위허가·신고, 사용검사 업무, 소방안전 및 방범교육 제외) 5. 하자담보책임 및 하자보수 6. 관리주체의 업무와 주택관리사 7.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 등 (공동주택관리 감사 업무 제외) 8. 벌칙 및 과태료 (다만, 위임된 사무범위에 한함)	· 「공동주택관리법」 제5조부터 제13조까지 · 같은 법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 같은 법 제18조부터 제22조까지 · 같은 법 제23조부터 제28조까지 · 같은 법 제29조부터 제35조까지 · 같은 법 제36조부터 제38조까지 · 같은 법 제63조부터 제66조까지 · 같은 법 제90조부터 제94조까지 · 같은 법 제97조부터 제102조까지
2. 주택단지 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다음의 사항	1. 안전진단 결과에 따른 철거명령 등 2. 사고조사 등 3. 보고·검사 등 4. 과태료 부과·징수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6조 · 같은 법 제22조 · 같은 법 제23조 · 같은 법 제31조

[건축과]

위 임 사 무 명	단 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1. 건축물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건축물의 건축 대수선, 용도변경, 건축물 사용승인 등 (6층 이하로서 연면적이 2,0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2. 기존 건축물 연면적의 10분의 3미만의 범위에서 하는 증축허가, 사용승인 (단, 증축 연면적이 2,0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 3. 허가와 신고사항 변경, 용도변경, 건축물 사용승인 (6층 이하로서 연면적이 2,000 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 「건축법」 제11조, 제16조, 제19조, 제21조, 제22조, 제25조, • 같은 법 시행령 제117조 • 같은 법 제11조 • 같은 법 시행령 제117조 • 같은 법 제16조, 제19조, 제22조 • 같은 법 시행령 제117조
2. 위반 건축물 조치에 관한 다음의 권한 (6층 이하로서 연면적이 2,0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1. 위반 건축물 및 대수선할 때의 조치(단 건축물의 냉방설비, 조경 유지관리 및 처분은 층수와 면적의 제한을 제외한다) 2. 위반 건축물에 대한 사용금지 또는 제한 3. 무단용도 변경 건축물에 대한 행정조치 및 단속 4. 예방단속 및 행정처분	• 「건축법」 제79조 • 같은 법 시행령 제117조 • 「건축법」 제79조 • 같은 법 시행령 제117조 • 「건축법」 제11조, 제14조, 제19조, 제41조, 제79조, 제85조 • 같은 법 시행령 제115조 • 「건축법」 제11조, 제14조, 제19조, 제41조, 제79조, 제85조 • 같은 법 시행령 제115조

위 임 사 무 명	단 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3. 건축물대장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건축물대장 관리 및 작성 2. 기존 건축물 공부의 건축물 대장 이기 3. 건축물대장 발급 4. 등기축탁	· 「건축법」 제38조 ·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 「건축법」 제39조 · 「건축법」 제13조
4. 미착공 및 미준공 건축물에 대한 조치	1. 미착공 및 미준공 건축물에 대한 조치	
5. 건축물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건축신고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및 대수선 2. 가설건축물 축조 관련업무	· 「건축법」 제14조 및 제16조 · 같은 법 제20조 ·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15조의2 · 같은 법 제83조
6. 주상복합아파트 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다음의 사항	3. 용벽 등 공작물 축조 관련 1. 안전진단 결과에 따른 철거명령 등 2. 사고조사 등 3. 보고·검사 등 4. 과태료 부과·징수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6조 · 같은 법 제22조 · 같은 법 제23조 · 같은 법 제31조
7. 건축물 유지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6층 이하로서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하 건축물)	1. 건축물 관리계획의 수립 및 유지 · 관리 행정지도 2. 건축물 긴급점검, 안전진단 등 점검 및 관리 (소규모 노후건축물 등 점검, 안전진단) 3. 건축물의 해체허가·(신고) · 완료신고 및 멸실 4. 건축물 생애관리대장 작성 및 관리	· 「건축물관리법」 제11조, 제12조 · 같은 법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21조, 제46조 · 같은 법 제30조, 제31조, 제33조, 제34조 · 같은 법 제9조

위 임 사 무 명	단 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8. 집합건물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5. 화재안전성능보강 사업 계획 및 지원·관리	· 같은 법 제27조, 제28조, 제29조
	6. 빈 건축물 정비	· 같은 법 제42조, 제43조
	7.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행정조치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7조, 제40조, 제41조
	1. 집합건물 관리 및 행정조치 (관리인선임, 회계감사, 분쟁조정, 고발 및 과태료 부과)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26조의2, 제65조 및 제66조

[토지정보과]

위 임 사 무 명	단 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1. 토지 등의 거래계약허가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토지 등의 거래계약 허가 신청에 대한 허가 또는 불허가 통보 2. 허가신청 토지에 대한 선매자 지정 및 통지 3. 토지의 이용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이행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4. 신고포상금 지급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 · 같은 법 제15조 · 같은 법 제18조 · 같은 법 제25조의2 ·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9조의3 ·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2 · 같은 법 제14조 ·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2. 국가 등의 행하는 토지거래 계약의 특례	1. 자치단체, 한국토지공사, 정부투자기관 및 공공단체 등의 토지거래계약 허가	· 같은 법 제28조 ·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3. 과태료	1. 토지 등의 거래에 관한 과태료 처분 및 징수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5조 · 같은 법 제6조 · 같은 법 제9조 ·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4항
4.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과징금 부과 및 징수 2. 이행강제금 부과 3. 위반사실 확인조사 4. 과징금 과오납금 환급 및 환급가산금 지급 5. 과징금 물납신청의 허가여부	· 같은 법 제28조 ·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5조 · 같은 법 제6조 · 같은 법 제9조 ·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4항 ·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3항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 ·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5. 개별공시지가조사 및 산정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개별공시지가 토지특성조사 및 산정 2. 개별공시지가 검증 3.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토지소유자 등의 의견청취	· 같은 법 제28조 ·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5조 · 같은 법 제6조 · 같은 법 제9조 ·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4항 ·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3항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 ·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위 임 사 무 명	단 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4. 개별공시지가의 이의신청 접수, 재조사 및 산정 5.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발급	•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교통정책과]

위 임 사 무 명	단 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1. 교통유발 부담금부과·징 수사무에 관한 권한 2. 자동차관리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조사 및 부과·징수 1. 불법구조 변경차량 지도·단속 2. 자동차관리사업에 대한 등록· 정비업, 매매업, 중고자동차성능·상태 점검자, 폐차업 등에 관한 사항 3. 자동차관리사업 양도·양수 신고 4. 자동차관리사업 변경등록 5. 자동차관리사업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제1항 ·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1항 · 「자동차관리법」 제34조 · 같은 법 제53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0조 · 같은 법 제55조 · 같은 법 제53조 · 같은 법 제72조, 제73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7조

[주차교통과]

위 임 사 무 명	단 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1. 주·정차 지도·단속 및 관련 업무	1. 주·정차 지도·단속 및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 2. 견인대행업체 선정 및 관리 3. 그 밖에 주·정차 지도에 관한 업무	· 「도로교통법」 제32조, 제35조, 제161조 · 같은 법 제36조 ·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 같은 법 147조
2. 전용차로 지도·단속	1. 전용차로 위반 단속 및 과태료 부과	· 「도로교통법」 제143조, 제161조
3. 부설주차장에 대한 다음의 사무 (다만, 구청 건축과에서 허가하는 건축물)	1.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검토 (건축협의) 2. 부설주차장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 등	· 「주차장법」 제6조, 제19조 · 같은 법 제8조의2, 제19조의3, 제19조의4, 제23조, 제24조, 제29조, 제32조
4. 기계식주차장에 대한 다음의 사무	1. 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인증 2. 기계식주차장의 사용검사 3. 기계식주차장치 철거신고 처리 4. 기계식주차장치 보수업 등록·변경 등 신고 및 관리 5. 기계식주차장 및 기계식주차장치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 등	· 「주차장법」 제19조의6, 제19조의7, 제19조의8 · 같은 법 제19조의9, 제19조의10, 제19조의12 · 같은 법 제19조의13 · 같은 법 제19조의14부터 제19조의19까지 · 같은 법 제29조, 제30조

[도로정책과]

위 임 사 무 명	단 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1. 도로 등의 연결 및 도로의 점용허가	1. 도로점용 허가 2.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 허가 및 변경 허가 3. 진출입로의 연결허가 4. 도로점용에 따른 안전관리 등	· 「도로법」 제61조 · 같은 법 제52조 · 같은 법 제53조 · 같은 법 제62조
2. 도로점용허가 받은 자에 대한 다음의 권한	1. 원상회복 2. 점용료의 징수 등	· 같은 법 제73조 · 같은 법 제66조
3. 도로의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법령 위반을 하였을 때에 다음의 조치를 취하는 권한	1. 도로점용 허가의 취소 2. 법령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	· 같은 법 제63조 · 같은 법 제96조
4. 도로의 점용허가를 받은 자에 대한 공익상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권한	1. 공익을 위한 처분 및 조치	· 같은 법 제97조
5. 도로 유지·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법정도로의 응급복구 2. 비법정도로 유지·관리 3. 도로 소파보수 4. 도로안전시설물 유지·관리	· 「도로법」 제31조
6. 시유지 관리	1. 시유지 재산관리 및 사용수익 허가	· 「고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
7. 도로 무단 점용자에 대한 다음의 권한	1. 노상적치물 정비 2. 과태료의 부과 징수	· 「도로법」 제61조, 제75조 · 같은 법 제117조

위 임 사 무 명	단 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3. 변상금의 징수	· 같은 법 제72조
	4. 원상회복	· 같은 법 제73조
	5. 행정대집행	· 같은 법 제74조
	6. 이행강제금	· 같은 법 제100조
8.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의 도로공사에 대한 다음의 권한	1.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허가(공동구를 제외한 도로부속물에 한한다)	· 「도로법」 제36조
	2. 법령위반자에 대한 처분 및 공익을 위한 처분	· 같은 법 제96조, 제97조
	3. 청문의 실시	· 같은 법 제101조
9. 사도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사도 개설허가	· 「사도법」 제4조
	2. 사도 개설허가의 취소	· 같은 법 제14조
	3. 처분 및 조치	· 같은 법 제16조, 제17조
10. 도로 표지의 설치 및 유지·관리	1. 도로 구조의 보존 및 도로표지설치 및 관리	· 「도로법」 제55조
11. 자전거이용시설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유지·관리)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0조

[도시개발과]

위 임 사 무 명	단 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1. 개발행위허가에 대한 다음의 권한 및 불법행위 단속(GB 제외)	1. 토지의 형질 변경 행위(건축물의 건축을 위한 경우 건축 연면적의 2,000제곱미터 이하, 6층 이하) 2. 건축에 관한 구청장 신고·허가 대상 건축물의 건축행위(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하, 6층 이하) 3. 공작물의 설치 4. 토지 분할(「건축법」 제49조의 규정에 따른 건축물이 있는 대지 제외) 5.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 (녹지·관리지역에서 건축물의 울타리 안이 아닌 토지에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6. 불법 개발행위 단속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 같은 법 제133조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제1항 •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 같은 법 제12조제1항 •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15조, 제17조 • 같은 법 제12조제1항 •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2.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	1.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허가 및 공작물 설치허가 2.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형질 변경 및 공작물 설치허가 3.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분할	

위 임 사 무 명	단 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3.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 (용도변경 허가 또는 신고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 용도변경 2.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증축, 개축 및 대수선, 임시시설허가 등 그 밖에 이에 해당하는 경미한 행위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제1항 •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제1항 •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4.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단속에 관한 사항	1. 개발제한구역 내 무허가 행위 단속 2. 불법행위에 대한 계고 및 고발 3. 불법행위에 대한 원상복구, 철거 등의 행정대집행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및 제30조 •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의 예방과 단속에 관한 규정」 제12조 • 같은 법 제2조 및 제30조, 제30조의2 •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의 예방과 단속에 관한 규정」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 • 같은 법 제2조 및 제30조 •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의 예방과 단속에 관한 규정」 제16조

[농업정책과]

위 임 사 무 명	단 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1. 농지전용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농지전용 신고 2. 농지전용 변경신고 3. 전용허가의 사후관리 및 불법 전용농지 단속 4. 농지전용 신고의 취소 5. 농지전용 신고의 용도변경 승인 6. 농지(신고)의 타 용도 일시 사용허가 및 변경신고	· 「농지법」 제35조 ·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 같은 법 제39조 및 제42조 ·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 · 같은 법 제39조 · 같은 법 제40조 · 같은 법 제36조
2. 농지이용 및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농지처분의 의무 통보 및 부과 2. 농지처분 명령 및 매수 청구 3. 유휴농지에 대한 대리경작자 지정 4.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 5. 농지임대차 관리	· 같은 법 제10조 · 같은 법 제11조 · 같은 법 제20조 · 같은 법 제8조 · 같은 법 제23조 · 같은 법 제49조
3. 농지원부의 작성비치 및 열람 교부에 관한 사항	1. 작성 및 비치 (구 농지원부 포함) 2. 교부 및 열람 3. 자경증명 발급	· 같은 법 제50조 · 같은 법 제50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59조

[농산유통과]

위 임 사 무 명	단 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1. 동물보호에 관한 다음의 사무	1. 영업의 등록 (동물장묘업 제외) 2. 영업의 승계 및 취소 (동물장묘업 및 동물생산업 제외) 3. 등록대상 동물의 관리 등 (목줄, 배변 관리) 4. 벌칙 및 과태료 (동물장묘업과 동물생산업을 제외한 영업 및 목줄, 배변에 관한 위반)	• 「동물보호법」 제33조 • 같은 법 제35조, 제38조 • 같은 법 제13조제2항 • 같은 법 제46조, 제47조

[녹지과]

위 임 사 무 명	단 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1. 공원·녹지의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공원·녹지 관리 (미조성 도시공원·녹지 포함) 2. 도시공원·녹지의 점용허가 3. 점용료의 징수 4. 법령 등 위반자에 대한 처분 및 청문 5. 도시공원 등에서의 금지행위·불법행위 단속 및 과태료 부과·징수 6. 도시자연공원구역 행위허가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제36조 · 같은 법 제24조, 제38조 · 같은 법 제41조부터 제43조까지 · 같은 법 제45조부터 제47조까지 · 같은 법 제49조 및 제53조부터 제56조까지 · 같은 법 제27조
2. 산림자원의 이용 및 보전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입목벌채 허가 2. 입목벌채 신고 3. 임산물의 굴취·채취 허가 4. 병해충 등의 예방·구제 5. 산림정화구역 내 시설의 설치 6. 임산물절취·불법입목벌채·굴취·채취 등 단속 및 사법처리 7. 입목벌채신고 및 산림오염 방지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 같은 법 제3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 · 같은 법 제3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5조 · 「산림보호법」 제23조부터 제26조까지 ·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부터 제25조까지 · 같은 법 제14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 제74조 · 같은 법 제79조 ·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

위 임 사 무 명	단 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3. 산불예방 및 진화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	8. 불법산지전용(산지전용 허가지 외) 등 산지불법행위 단속 및 사법처리 9. 포상금의 지급(불법신고자) 1. 산불방지대책본부 설치·운영 2. 산불현장통합지휘본부 설치·운영 3. 산불예방을 위한 금지행위 등에 대한 허가 4. 사상자 보상금 지급 5. 입산허가 6. 방화 및 실화범 처벌 7.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 「산지관리법」 제53조, 제55조 · 「산지관리법」 제46조의2 · 같은 법 시행규칙 제50조의2 · 「산림보호법」 제30조 ·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 같은 법 제38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 · 같은 법 제34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 같은 법 제44조 · 같은 법 제15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 같은 법 제53조 · 같은 법 제57조

[생태하천과]

위 임 사 무 명	단 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1. 공유수면의 관리에 관한 다음 권한	1. 공유수면 관리 2. 공작물의 신·개축 변경, 제거 허가 3. 접속토지의 수면 이하로의 굴착허가 4. 준설, 굴착허가 5. 인수 및 수주허가 6. 토석, 사력채취, 식물재배 및 벌채허가 7. 토석, 절개 등의 투기나 수심에 영향을 미칠 행위허가 8. 호안 방파제 등의 시설물 점용허가 9. 그 밖의 점용허가 10. 점용허가에 대한 고시 11. 공유수면 관리를 위한 조사 및 질문 12. 공유수면의 장애물 제거명령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 같은 법 제8조제1항제1호 • 같은 법 제8조제1항제2호 • 같은 법 제8조제1항제3호 • 같은 법 제8조제1항제5호 • 같은 법 제8조제1항제6호, 제7호 • 같은 법 제8조제1항제8호 • 같은 법 제8조제1항제9호 • 같은 법 제8조제1항제10호, 제11호 • 같은 법 제8조제6항 •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 같은 법 제55조제1항
2.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 및 권리·의무에 관한 권한	1. 점용료, 사용료의 부과 및 징수 2. 점용료, 사용료의 부과 감면 3. 점용료, 사용료의 강제징수 4. 원상회복의무 명령 면제 승인 5. 권리의무의 이전허가 6. 권리의무의 상속신고 처리 7. 허가기간 연장허가 8. 공사의 착공, 준공신고 처리	• 같은 법 제6조 • 같은 법 제13조제1항 • 같은 법 제13조제1항 • 같은 법 제13조제8항 • 같은 법 제21조 • 같은 법 제16조 • 같은 법 제21조 •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 같은 법 제17조, 제18조

위 임 사 무 명	단 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3. 공유수면 점용·사용 관련 처분에 관한 권한	1. 점용·사용허가 등의 취소 등 2. 효력의 정지처분, 원상회복, 손해방지 시설의 설치	· 같은 법 제19조 · 같은 법 제21조
4. 소하천 허가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비관리청의 공사시행 2. 소하천의 점용 등 3. 허가의 제한	· 「소하천정비법」 제10조 ·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 같은 법 제14조 ·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 같은 법 제15조
5. 소하천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소하천의 정비와 유지관리 2. 주민의견의 청취 3. 토지 등의 수용 4. 원상회복 의무 5. 법령 위반자 등에 대한처분 6. 공익을 위한 처분 및 청문 7. 허가의 실효 8. 수익과 비용의 범위 등 9. 점용료 등의 징수 10. 공용부담 등으로 인한 손실보상 11. 점용료 등의 강제징수 12. 소하천공사 준공검사 13. 소요공사비의 예치 14. 점용 등의 신고 15. 소하천 정비 상태의 점검	· 「소하천정비법」 제3조제6항 · 같은 법 제11조 · 같은 법 제12조 · 같은 법 제16조 · 같은 법 제17조 · 같은 법 제18조, 제18조의2 · 같은 법 제20조 · 같은 법 제21조 ·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 같은 법 제22조 · 같은 법 제24조 · 같은 법 제23조 ·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6. 시유지 관리	1. 시유지 사용허가	· 「고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8조부터 20조까지

위 임 사 무 명	단 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7. 하천구역 또는 하천시설 내 어린이놀이기구 안전관리에 관한 다음의 사항	1. 안전진단 결과에 따른 철거명령 등 2. 사고조사 등 3. 보고·검사 등 4. 과태료 부과·징수	• 「어린이놀이기구 안전관리법」 제16조 • 같은 법 제22조 • 같은 법 제23조 • 같은 법 제31조

[별표 2]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제2조 관련)

[민원여권과]

위 임 사 무 명	단 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1. 주민등록 업무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시장이 관장하는 권한 중 다음 사무를 제외한 기타 사무 가. 「주민등록법」 제30조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 이용에 관한 사항 나.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른 회수 주민등록증의 파기에 관한 사항	· 「주민등록법」 제2조

〔징수과〕

위 임 사 무 명	단 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1. 시세 부과·징수 사무에 관한 다 음의 권한	1. 시세납세증명서 발급 2. 시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발급	· 「지방세징수법」 제5조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7조

[복지정책과]

위 임 사 무 명	단 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1. 의료급여에 관한 다음의 사항 2. 자활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의료급여증 발급, 반납 및 회수 1. 생계급여의 조건제시 방법 및 결과 통지	•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5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11조

[노인복지과]

위 임 사 무 명	단 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1. 기초연금에 관한 사항 2.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음의 권한	1. 연금신청, 변경신고 1. 매장· 화장· 개장의 신고 2. 매· 화장 신고필증 및 납골 증명 3. 공설묘지 사용료 및 수수료 징수 4. 묘적부의 비치 및 관리	• 「기초연금법」 제10조 및 제18조 •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 같은 법 제8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10조 • 「고양시 장시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4조 • 같은 법 제22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제9조

[장애인복지과]

위 임 사 무 명	단 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1. 장애인 보호 관리	1. 장애인의 등록·등급 조정 신청 및 장애 진단의뢰 2. 장애인 등록증의 교부 등 3. 장애 상태의 확인 및 등록증 반환 명령 4. 등록현황의 기록 및 관리 5. 장애인 자동차 표지 발급 및 관리	・ 「장애인복지법」 제32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제6조 ・ 같은 법 제32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 같은 법 제32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제8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 같은 법 제39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

[건축과]

위 임 사 무 명	단 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1. 건축물대장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건축물대장 발급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별표 1]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신 설>	[별표 1]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제2조 관련) [도시디자인담당관] <table><tr><th>위임사무명</th><th>단 위 사 무 명</th><th>근 거 법 규</th></tr><tr><td>1. 옥외광고물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td><td>1. 광고물 등의 표시 또는 설치 관련 허가·신고 및 간판표시계획서 제출에 관한 사항(공공기관의 공공 목적 광고물을 포함한다)</td><td>·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 제6조</td></tr><tr><td></td><td>2. 허가 및 신고사항의 변경과 기간연장 등에 관한 사항</td><td>· 같은 법 시행령 제4조부터 제8조까지, 제23조, 제29조</td></tr><tr><td></td><td>3. 광고물 등의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td><td>· 같은 법 제3조</td></tr><tr><td></td><td>4.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td><td>·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10조</td></tr><tr><td></td><td></td><td>· 같은 법 제9조</td></tr><tr><td></td><td></td><td>·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td></tr><tr><td></td><td></td><td>· 같은 법 제10조부터 제10조의3까지, 제20조</td></tr><tr><td></td><td></td><td>· 같은 법 시행령</td></tr></table>	위임사무명	단 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1. 옥외광고물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광고물 등의 표시 또는 설치 관련 허가·신고 및 간판표시계획서 제출에 관한 사항(공공기관의 공공 목적 광고물을 포함한다)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 제6조		2. 허가 및 신고사항의 변경과 기간연장 등에 관한 사항	· 같은 법 시행령 제4조부터 제8조까지, 제23조, 제29조		3. 광고물 등의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 같은 법 제3조		4.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	·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10조			· 같은 법 제9조			·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 같은 법 제10조부터 제10조의3까지, 제20조			· 같은 법 시행령
위임사무명	단 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1. 옥외광고물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광고물 등의 표시 또는 설치 관련 허가·신고 및 간판표시계획서 제출에 관한 사항(공공기관의 공공 목적 광고물을 포함한다)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 제6조																										
	2. 허가 및 신고사항의 변경과 기간연장 등에 관한 사항	· 같은 법 시행령 제4조부터 제8조까지, 제23조, 제29조																										
	3. 광고물 등의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 같은 법 제3조																										
	4.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	·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10조																										
		· 같은 법 제9조																										
		·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 같은 법 제10조부터 제10조의3까지, 제20조																										
		· 같은 법 시행령																										

[시민안전과]

위임사무명	단 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1. (생 략) 2.~4. (생 략)	1. (생 략) 2.~3. (생 략)	· 「민방위기본법」 제18조부터 제19조까지, 제21조

[재난대응과]

위임사무명	단 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1. 「재난 및 안전 관리 기본법」에 의한 다음의 권한 2. (생 략)	1.~3. (생 략)	

[행정지원과]

위임사무명	단 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1. 소속 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연가계획 및 허가 2. 병가 및 공가 허가	· 「고양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17조, 제19조 및 제20조

[시민안전담당관]

위임사무명	단 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1. (현행과 같음) 2.~4.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3. (현행과 같음)	· 「민방위기본법」 제18조 제19조, 제21조

[재난대응담당관]

위임사무명	단 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다음의 권한 2. (현행과 같음)	1.~3. (현행과 같음)	

[행정지원과]

위임사무명	단 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1. 소속 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연가계획 및 허가 2. 병가 및 공가 허가	· 「고양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17조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5, 제7조의6

2. 그 소속 지방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 (다만 구 신설 폐지 분합이 있을 때에는 「고양시 지방공무원인사관리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의함)	1. 공무원의 승진임용 제청 2. 공무원의 전(출)입 제청	• 「지방공무원법」 제39조 •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0조 •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2 •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7조의5	<삭 제>		
3. 6급 이하 공무원에 대한 다음의 권한	1. 6급 공무원에 대한 보직, 전보 (구간 전보 제외) 2. 7급 이하 공무원에 대한 보직, 전보, 승급, 휴직, 복직, 면직, 징계(다만, 구간 전보 및 6급과 동일 건으로 관련된 7급 이하의 징계, 구를 달리하는 7급 이하의 징계는 제외)	• 「지방공무원법」 제6조	<삭 제>		
4. 청원경찰 배치	1. (생략)	•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5조	2. 청원경찰 배치	1. (현행 제4호와 같음)	•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6조

<신 설>

[인적자원과]

위임사무명	단 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1. 6급 이하 공무원에 대한 다음의 권한	1. 6급 공무원에 대한 보직, 전보 (구간 전보 제외) 2. 7급 이하 공무원에 대한 보직, 전보, 승급, 휴직, 복직, 면직, 징계(다만 구간 전보 및 6급과 동일 건으로 관련된 7급 이하의 징계 구를 달리하 는 7급 이하의 징계는 제외)	· 「지방공무원법」 제6조 · 같은 법 제6조

[민원여권과]

위임사무명	단 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생 략)		

[민원여권과]

위임사무명	단 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현행과 같음)		

[일자리정책과]

위임사무명	단 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1. (생 략)	1.~3. (생 략)	

[일자리정책과]

위임사무명	단 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1. (현행과 같음)	1.~3. (현행과 같음)	

위임사무명	단 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4.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 <u>실적 및 사업현황</u> 보고 5.~6. (생 략)	· 같은 법 시행규칙 <u>제27조, 제28조</u>

위임사무명	단 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4.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 <u>사업 현황</u> 보고 5.~6. (현행과 같음)	· 같은 법 시행규칙 <u>제28조</u>

[소상공인지원과]

위임사무명	단 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1. (생 략)	1.~4. (생 략)	
2. (생 략)	1. (생 략) 2. (생 략) 3. (생 략)	· 「 <u>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u> 」 제5조 · 같은 법 <u>제41조, 제58조</u>

[소상공인지원과]

위임사무명	단 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1. (현행과 같음)	1.~4.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 「 <u>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u> 」 제5조 · 같은 법 <u>제48조, 제66조</u>

[세정과]

위임사무명	단 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1. (생 략)	1. (생 략) 2.~5. (생 략)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7조 · 같은 법률 시행령 <u>제34조</u> 부터 <u>제35조</u> 까지

[세정과]

위임사무명	단 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1.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5. (현행과 같음)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7조 · 같은 법 시행령 <u>제34조, 제35조</u>

[복지정책과]

위임사무명	단 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1. (생 략)	1. (생 략)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u>제22조부터 제23조까지</u>
	2. (생 략)	· 같은 법 제9조 및 <u>제12조</u> <u>부터 제14조까지</u>
		·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 16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제7조, 제17조 및 제18조
	3. (생 략)	
2. (생 략)	1. (생 략)	· 「의료급여법 시행령」 <u>제3조, 제5조</u>
	2. (생 략)	·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u>제2조</u>
	3. (생 략)	·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u>제12조부터 제14조까지</u>
	4. (생 략)	· 「의료급여법」 제20조부 <u>터 제23조까지</u>
		· 같은 법 제12조부터 제13 <u>조까지</u>
		·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복지정책과]

위임사무명	단 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1.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u>제22조, 제23조</u>
	2. (현행과 같음)	· 같은 법 제9조 및 <u>제12조, 제12조의2,</u> <u>제13조, 제14조</u>
		·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16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제7조, 제17조, 제18조
	3.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 「의료급여법 시행령」 <u>제3조</u>
	2. (현행과 같음)	·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u>제12조</u>
	3. (현행과 같음)	· 「의료급여법」 <u>제23조</u>
	4. (현행과 같음)	· 같은 법 제12조, 제13조

3. (생략)	1. (생략)	3.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신설>		4. 긴급지원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긴급지원대상자 신청·접수 및 사후조사 실시	· 「긴급복지지원법」 제4조, 제8조, 제13조 ·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8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제8조
			2. 긴급지원대상자 급여(생계, 의료, 주거, 사회복지시설이용, 교육, 연료, 해산, 장제, 잔기요금) 지급 및 보장비용의 환수	· 「긴급복지지원법」 제9조, 제15조 · 같은 법 시행령 제2조부터 제6조까지 ·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3
<신설>		5. 노숙인 등의 처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노숙인 등의 응급조치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신설>		6. 국민기초생활보장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기초생활수급자 조사(자환) 보고 2. 기초생활수급자 급여(자환) 지급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2조 및 제23조 · 같은 법 제15조 · 같은 법 제27조 ·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찾아가는복지과]

<삭 제>

위임사무명	단 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1. 긴급지원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긴급지원대상자 신청·접수 및 사후조사 실시	· 「긴급복지지원법」 제4조, 제8조, 제13조 ·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 8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제8조
	2. 긴급지원대상자 급여(생계, 의료, 주거, 사회복지시설이용, 교육, 연 료, 해산, 장제, 잔여금지급 및 보장비용의 환수	· 「긴급복지지원법」 제9 조, 제15조 · 같은 법 시행령 제2조부 터 제6조까지 ·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의3
2. 노숙인 등의 처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노숙인 등의 응급조치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3. 국민기초생활보장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기초생활수급자 조사(지환) 보고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2조 및 제23조
	2. 기초생활수급자 급여(지환) 지급	· 같은 법 제15조 · 같은 법 제27조 ·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여성가족과]

위임사무명	단 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생 략)		

[노인복지과]

위임사무명	단 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1. (생 략)	1.~4. (생 략) 5. (생 략)	· 「고양시 효가정지원조례」 제5조, 제6조
2. (생 략)	1. (생 략) 2. (생 략) 3. (생 략)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 · 같은 법률 시행규칙 제20조, 제20조의4 · 같은 법률 제30조, 제32조 · 같은 법률 시행규칙 제22조 · 같은 법률 제32조, 제33조, 제35조, 제39조부터 제42조까지 · 같은 법률 시행령 제38조, 제39조, 제41조 · 같은 법률 시행규칙 제21조, 제24조

[가족정책과]

위임사무명	단 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현행과 같음)		

[노인복지과]

위임사무명	단 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1. (현행과 같음)	1.~4. (현행과 같음) 5. (현행과 같음)	· 「고양시 「효」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제6조
2.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 · 같은 법률 시행규칙 제20조, 제20조의4 · 같은 법률 제30조, 제32조 · 같은 법률 시행규칙 제22조 · 같은 법률 제32조, 제33조, 제35조, 제39조부터 제42조까지 · 같은 법률 시행령 제38조, 제39조, 제41조 · 같은 법률 시행규칙 제21조, 제24조

위임사무명	단 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3. (생 략) 4.~7. (생 략)	4. (생 략) 1. (생 략)	· 같은 <u>법률</u> 제37조 · 같은 <u>법률</u> 시행규칙 제25조 제2항 · 같은 <u>법률</u> 제12조 · 같은 <u>법률</u> 시행령 제9조 · 같은 <u>법률</u> 시행규칙 제4조

[장애인복지과]

위임사무명	단 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1. (생 략)	1. (생 략) 2. (생 략) 3. (생 략)	· 같은 법 제6조, 제38조, <u>제49조</u> <u>부터 제50조까지</u> ·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부터 제33조까지 ·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부터 제25조까지, 제38조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7조 · 같은 <u>법률</u> 시행령 제13조

위임사무명	단 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3. (현행과 같음) 4.~7. (현행과 같음)	4.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 같은 <u>법</u> 제37조 · 같은 <u>법</u> 시행규칙 제25조 제2항 · 같은 <u>법</u> 제12조 · 같은 <u>법</u> 시행령 제9조 · 같은 <u>법</u> 시행규칙 제4조

[장애인복지과]

위임사무명	단 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1.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 같은 법 제6조, 제38조, <u>제49조</u> , <u>제50조</u> ·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부터 제33조까지 ·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부터 제25조까지, 제38조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7조 · 같은 <u>법</u> 시행령 제13조

[아동청소년과]

위임사무명	단 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생 략)		

[기후에너지과]

위임사무명	단 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1. (생 략)	1. (생 략)	· 「 <u>악취방지법</u> 」 <u>시행규칙</u> 제9조 · <u>같은 법</u> 제10조
	2. (생 략)	
	3.~7. (생 략)	
2. 「대기환경보전법」, 「 <u>소음진동관리법</u> 」에 관한 다음의 권한	1.~4. (생 략)	· 「대기환경보전법」 제61조 · 「소음·진동관리법」 <u>제3조</u>
	5. (생 략)	
	6.~10. (생 략)	
3.~4. (생 략)		
5.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한 다음의 권한	1. (생 략)	

[자원순환과]

위임사무명	단 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1. (생 략)	1~8. (생 략)	

[아동보육과]

위임사무명	단 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현행과 같음)		

[기후에너지과]

위임사무명	단 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1.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 「 <u>악취방지법</u> 」 <u>시행규칙</u> 제9조 · 「 <u>악취방지법</u> 」 제10조
	2. (현행과 같음)	
	3.~7. (현행과 같음)	
2. 「대기환경보전법」, 「 <u>소음·진동관리법</u> 」에 관한 다음의 권한	1.~4. (현행과 같음)	· 「대기환경보전법」 제61조 · 「소음·진동관리법」 <u>제36조</u>
	5. (현행과 같음)	
	6.~10. (현행과 같음)	
3.~4. (현행과 같음)		
5.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다음의 권한	1. (현행과 같음)	

[자원순환과]

위임사무명	단 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1. (현행과 같음)	1.~8. (현행과 같음)	

2. (생 략)	1. (생 략)	• 「 <u>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u> 」 제9조	2.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 「 <u>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u> 」 제9조
	2. (생 략)	• 같은 <u>법률</u> 제9조제3항		2. (현행과 같음)	• 같은 <u>법</u> 제9조제3항
	3. (생 략)	• 같은 <u>법률</u> 제12조의3		3. (현행과 같음)	• 같은 <u>법</u> 제12조의3
	4. (생 략)	• 같은 <u>법률</u> 제13조		4. (현행과 같음)	• 같은 <u>법</u> 제13조
3. (생 략)	5. (생 략)	• 같은 <u>법률</u> 제15조의2	3. (현행과 같음)	5. (현행과 같음)	• 같은 <u>법</u> 제15조의2
	6. (생 략)	• 같은 <u>법률</u> 제36조		6. (현행과 같음)	• 같은 <u>법</u> 제36조
	7. (생 략)	• 같은 <u>법률</u> 제39조부터 제41조까지		7. (현행과 같음)	• 같은 <u>법</u> 제39조부터 제41조까지
	1. (생 략)	• 「 <u>고양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u> 」 제7조		1. (현행과 같음)	• 「 <u>고양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u> 」 제8조
4. (생 략)	2. (생 략)	• 같은 <u>조례</u> 제15조	4.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 같은 <u>조례</u> 제19조
	1. 공중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재산관리관이 지정된 <u>공중 화장실</u> 제외)	• 「 <u>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u> 」 제6조 및 제8조		1. 공중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재산관리관이 지정된 <u>공중화장실</u> 제외)	• 「 <u>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u> 」 제6조 및 제8조
	2. (생 략)	• 같은 <u>법률</u> 제9조		2. (현행과 같음)	• 같은 <u>법</u> 제9조
	3. (생 략)	• 같은 <u>법률</u> 시행령 제8조		3. (현행과 같음)	• 같은 <u>법</u> 시행령 제8조
	4. (생 략)	• 같은 <u>법률</u> 제16조		4. (현행과 같음)	• 같은 <u>법</u> 제16조
		• 같은 <u>법률</u> 제19조			• 같은 <u>법</u> 제19조

[식품안전과]

위임사무명	단 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1. (생 략)	1. (생 략) 2. 허가사항 <u>변경</u> (<u>허가신청 신고</u>) 3. 영업자 <u>지위 승계신고</u> 4. 폐업신고	· 같은 법 제37조제1항 ·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 · 같은 법 제39조제3항 ·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제1항 · 같은 법 제37조제3항 및 제4항 ·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2. <u>기타</u> 식품위생업 중 시장에 대한 영업신고에 관한 사항(다만, 식품 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은 제외)	1. (생 략) 2. (생 략) 3. 영업자 <u>지위 승계신고</u> 4. (생 략)	· 같은 법 제37조제4항 ·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 · 같은 법 제37조제3항, 제4항 ·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 「식품위생법」 제88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94조제1항
3. 집단급식소에 관한 사항	1. 집단급식소 <u>설치</u> 신고 2. 집단급식소 설치·운영 신고사항 변경신고	· 같은 법 제88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94조 · 같은 법 제88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94조

[식품안전과]

위임사무명	단 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1.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허가사항 <u>변경</u> (<u>허가신청 신고</u>) 3. 영업자 <u>지위승계 신고</u> 4. 폐업신고	· 같은 법 제37조제1항 및 제3항 ·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 · 같은 법 제39조제3항 ·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제1항 · 같은 법 제37조제3항 ·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2. <u>그 밖에</u> 식품위생업 중 시장에 대한 영업신고에 관한 사항(다만, 식품 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은 제외)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영업자 <u>지위승계 신고</u> 4. (현행과 같음)	· 같은 법 제37조제4항 ·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제1항 · 같은 법 제37조제4항 ·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 「식품위생법」 제88조제1항 · 같은 법 시행규칙 제94조제1항
3. 집단급식소에 관한 사항	1. 집단급식소 <u>설치·운영 신고</u> 2. 집단급식소 설치·운영 신고사항 변경신고	· 같은 법 제88조제1항 · 같은 법 시행규칙 제94조 · 같은 법 제88조제1항 · 같은 법 시행규칙 제94조

	3. 집단급식소 설치· <u>운영중단</u> <u>신고서</u>	<u>제5항</u> · 같은 법 <u>제88조</u> · 같은 법 시행규칙 <u>제94조제6항</u>		3. 집단급식소 설치·운영 <u>종료</u> <u>신고</u>	<u>제7항</u> · 같은 법 <u>제88조제6항</u> · 같은 법 시행규칙 <u>제94조제9항</u>
	4. 집단급식소 지도·단속	· 같은 법 제22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		4. 집단급식소 지도·단속	· 같은 법 제22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
	5. 행정처분, 청문, 과징금, 과태료 등	· 같은 법 <u>제71조부터 제75조</u> <u>까지</u> 및 <u>제78조부터 제82조</u> <u>까지</u> , <u>제101조</u> , <u>제102조</u>		5. 행정처분, 청문, 과징금, 과태료 등	· 같은 법 <u>제71조부터 제75조</u> <u>까지</u> 및 <u>제78조부터 제84조</u> <u>까지</u> , <u>제93조부터 제97조</u> <u>까지</u> , <u>제101조</u> , <u>제102조</u>
4. (생 략)	1. (생 략) 2. (생 략)	· 같은 법 <u>제71조부터 제75조</u> <u>까지</u> 및 <u>제78조부터 제82조</u> <u>까지</u>	4.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 같은 법 <u>제71조부터 제75조</u> <u>까지</u> , <u>제78조부터 제84조</u> <u>까지</u> , <u>제93조부터 제98조</u> <u>까지</u>
	3.~5. (생 략)			3.~5. (현행과 같음)	
5. <u>기타</u> 식중독 등 식품위생 관련 추진업무	1. 식중독 발생 관리 및 음식문화개선(모범음식점) 등 각종 시책 관련 업무	· 「식품위생법」 제47조, 제86조, 제89조 · 같은 법 시행령 <u>제61조</u> , <u>제62조</u>	5. <u>그 밖</u> 에 식중독 등 식품위생 관련 추진업무	1. 식중독 발생 관리 및 음식문화개선(모범음식점) 등 각종 시책 관련 업무	· 「식품위생법」 제47조, 제86조, 제89조 · 같은 법 시행령 <u>제59조</u> , <u>제61조</u> , <u>제62조</u>

6. 공중위생영업 영업 신고에 관한 다 음의 권한	1. 영업 신고 및 폐업신고(<u>숙박 업, 목욕장업, 이용업, 미용 업, 세탁업, 건물위생관리업</u>)	·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 제93조 ·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부터 제3조3항	6. 공중위생영업 영업신고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영업 신고 및 폐업신고	·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 제93조 ·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부터 제3조의3까지
	2. <u>지위승계</u>	· 같은 법 제3조2항 ·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4항		2. <u>영업자 지위승계 신고</u>	· 같은 법 제3조의2 ·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5
7. (생 략)	1. (생 략)		7.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8. (생 략)	1. (생 략)	· <u>공중위생관리법</u> 제10조	8.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 「공중위생관리법」 제10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
	2. (생 략)	· <u>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u> · <u>같은 법 제11조, 제11조 제2항, 제11조제6항</u> · <u>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5항</u>		2. (현행과 같음)	· <u>같은 법 제11조, 제11조의2, 제11조의6</u>
	3~4. (생 략)			3~4. (현행과 같음)	
9. (생 략)	1. (생 략)	· 「공중위생관리법」 제10조 · <u>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8조</u>	9.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 「공중위생관리법」 제10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
10. (생 략)	1~2. (생 략)		10. (현행과 같음)	1~2. (현행과 같음)	
11. (생 략)	1~2. (생 략)		11. (현행과 같음)	1~2. (현행과 같음)	
	3. 영업자 <u>지위승계</u>	· 같은 법 제6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3. 영업자 <u>지위승계 신고</u>	· 같은 법 제6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12.~15. (생 략)		
---------------	--	--

[문화예술과]

위임사무명	단 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1. (생 략)	1. 공연장업의 등록(변경) 및 <u>등록</u> <u>필증의 재교부</u>	· 「공연법」 제9조 ·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2. (생 략)	1. (생 략) 2. <u>신고필증 반납 및 보고</u>	·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1조 · 「인쇄문화산업진흥법」 제3조
	3. (생 략)	·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28조제1항제1호, <u>제5호</u> , <u>제5호의2</u>
3. (생 략)	1. (생 략)	· 「영화 및 비디오물 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
	2. (생 략)	· 같은 법률 제26조제2항
	3. (생 략)	· 같은 법률 제36조제1항
	4. (생 략)	· 같은 법률 제41조제1항
	5. (생 략)	· 같은 법률 제42조
	6. (생 략)	· 같은 법률 제45조
	7. (생 략)	· 같은 법률 제46조

12.~15. (현행과 같음)		
------------------	--	--

[문화예술과]

위임사무명	단 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1. (현행과 같음)	1. 공연장업의 등록(변경) 및 <u>등록</u> <u>필증의 재교부</u>	· 「공연법」 제9조 ·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2.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u>폐업 및 직권말소</u>	·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1조 · 「인쇄문화산업진흥법」 제3조
	3. (현행과 같음)	·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28조제1항제1호· <u>제2호</u> , <u>제2항제1호</u> · <u>제3호</u>
3.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
	2. (현행과 같음)	· 같은 법 제26조제3항
	3. (현행과 같음)	· 같은 법 제36조제1항
	4. (현행과 같음)	· 같은 법 제41조제1항
	5. (현행과 같음)	· 같은 법 제42조
	6. (현행과 같음)	· 같은 법 제45조
	7. (현행과 같음)	· 같은 법 제46조

4. (생략)	8. <u>비디오물시청제공업 제작업 배급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 등록증의 교부·갱신 교부</u>	· 같은 법률 제57조, 제58조, 제60조, 제61조	4.(헌행과 같음)	8. <u>비디오물제작업·배급업의 신고, 비디오물시청제공업의 등록, 신고증·등록증의 교부, 변경신고·변경등록</u>	· 같은 법 제57조, 제58조, 제60조, 제61조
	9. <u>비디오물시청제공업 제작업 배급업의 영업 지위승계 신고</u>	· 같은 법률 제63조		9. <u>비디오물제작업자·배급업자 또는 비디오물시청제공업자의 영업 지위승계 신고</u>	· 같은 법 제63조
	10. <u>비디오물시청제공업 제작업 배급업의 폐업신고 및 작권말소</u>	· 같은 법률 제64조		10. <u>비디오물제작업·배급업 또는 비디오물시청제공업의 폐업신고 및 작권말소</u>	· 같은 법 제64조
	11. <u>비디오물시청제공업자, 제작업자, 배급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과징금부과, 영업소 폐쇄 및 비디오물 수거 등 조치</u>	· 같은 법률 제67조, 제68조, 제69조, 제70조		11. <u>비디오물제작업자·배급업자, 비디오물시청제공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과징금 부과, 영업소 폐쇄 및 비디오물 수거 등 조치</u>	· 같은 법 제67조, 제68조, 제70조
	12. <u>비디오물시청제공업자 교육 및 모범업자에 대한 지원</u>	· 같은 법률 제88조부터 제90조까지		12. <u>비디오물시청제공업자 교육 및 모범적인 비디오물시청제공업자에 대한 지원</u>	· 같은 법 제88조, 제89조
	13. <u>과태료 부과·징수</u>	· 같은 법률 제98조 제99조		13. <u>수수료 책정</u>	· 같은 법 제90조
	14. <u>수수료 책정</u>	· 같은 법률 제90조		14. <u>과태료 부과·징수</u>	· 같은 법 제98조, 제99조
	1. <u>게임물관리사업자 교육, 모범 게임제공·영업소 지정 및 지원</u>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		1. <u>게임물관리사업자 교육, 모범 게임제공·영업소 지정 및 지원</u>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

5. (생 략)	2. 게임제작업 또는 배급업 등록, 변경 등록	· 같은 법률 제25조	5.(현행과 같음)	2. 게임제작업 또는 배급업 등록, 변경등록	· 같은 법 제25조
	3. (생 략)	· 같은 법률 제26조		3. (현행과 같음)	· 같은 법 제26조
	4. (생 략)	· 같은 법률 제29조		4. (현행과 같음)	· 같은 법 제29조
	5. 게임물 관련사업자에 대한 폐업과 작권말소	· 같은 법률 제30조		5. 게임물 관련사업자에 대한 폐업 및 작권말소	· 같은 법 제30조
	6. (생 략)	· 같은 법률 제31조		6. (현행과 같음)	· 같은 법 제31조
	7. 게임물 관련사업자에 대한 영업폐쇄 등 행정 조치(영업정지, 허가, 등록취소, 영업폐쇄, 과징금 부과, 청문)	· 같은 법률 제35조부터 제37조까지 및 제40조		7. 게임물 관련사업자에 대한 영업폐쇄 등 행정 조치(영업정지, 허가·등록 취소, 영업폐쇄, 과징금 부과, 청문)	· 같은 법 제35조, 제36조, 제40조
	8. (생 략)	· 같은 법률 제38조		8. (현행과 같음)	· 같은 법 제38조
	9. (생 략)	· 같은 법률 제48조		9. (현행과 같음)	· 같은 법 제48조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신고	· 같은 법률 제16조제2항		2.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배급업,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신고	· 같은 법 제16조제1항·제2항
	3. (생 략)	· 같은 법률 제18조		3. (현행과 같음)	· 같은 법 제18조
	4. 신고증·등록증 교부	· 같은 법률 제20조		4. 신고증·등록증 교부	· 같은 법 제20조
	5. (생 략)	· 같은 법률 제21조		5. (현행과 같음)	· 같은 법 제21조
	6. (생 략)	· 같은 법률 제24조		6. (현행과 같음)	· 같은 법 제24조

	7. (생 략)	· 같은 법률 제27조, 제30조
	8. (생 략)	· 같은 법률 제28조
	9. (생 략)	· 같은 법률 제29조
	10. (생 략)	· 같은 법률 제36조

	7. (현행과 같음)	· 같은 법 제27조, 제30조
	8. (현행과 같음)	· 같은 법 제28조
	9. (현행과 같음)	· 같은 법 제29조
	10. (현행과 같음)	· 같은 법 제36조

[관광과]

위임사무명	단 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생 략)		

[관광과]

위임사무명	단 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현행과 같음)		

[체육정책과]

위임사무명	단 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1. (생 략)	1. (생 략)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
	2. (생 략)	· 같은 법률 시행규칙 제21조
		· 같은 법률 시행령 제2조의6 제3항
	3. (생 략)	· 같은 법률 제17조
	4. (생 략)	· 같은 법률 제30조
	5. (생 략)	· 같은 법률 시행규칙 제27조

[체육정책과]

위임사무명	단 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1.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
	2. (현행과 같음)	·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
		·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5
	3. (현행과 같음)	· 같은 법 제17조
	4. (현행과 같음)	· 같은 법 제30조
	5. (현행과 같음)	· 같은 법 제32조

	6. (생 략) 7. 시책 수립에 필요한 사항 등의 <u>보호</u> 8. (생 략) 9. (생 략) 10. (생 략)	<u>제2항</u> · 같은 <u>법률</u> 제37조제3호 · 같은 <u>법률</u> 제40조 · 같은 <u>법률</u> 시행령 제23조 · 같은 <u>법률</u> 제29조 · 같은 <u>법률</u> 시행규칙 제26조
--	--	---

	6. (현행과 같음) 7. 시책 수립에 필요한 사항 등의 <u>보고</u> 8. (현행과 같음) 9. (현행과 같음) 10. (현행과 같음)	· 같은 <u>법</u> 시행규칙 제27조제3항 · 같은 <u>법</u> 제33조 · 같은 <u>법</u> 제36조 · 같은 <u>법</u> 제37조 · 같은 <u>법</u> 제40조 · 같은 <u>법</u> 시행령 제23조 · 같은 <u>법</u> 제29조 · 같은 <u>법</u> 시행규칙 제26조
--	--	---

[도시계획정책관]

위임사무명	단 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1. (생 략)	1. (생 략)	·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 제10조 · <u>같은법</u> 시행령 제9조 · <u>같은법</u> 시행규칙 제2조

[도시계획정책관]

위임사무명	단 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1.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 「 <u>토지이용규제 기본법</u> 」 제10조 · <u>같은법</u> 시행령 제9조 · <u>같은법</u> 시행규칙 제2조

[주택과]

위임사무명	단 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생 략)		

[주택과]

위임사무명	단 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현행과 같음)		

[건축디자인과]

위임사무명	단 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1.~5. (생 략) 6. 옥외광고물 관리 에 관한 다음의 권한 7. (생 략) 8. 건축물 유지관리 에 관한 다음의 권한 (6층 이하로서 연면적 2,000㎡ 이하 건축물 9. (생 략)	1. (생 략) 2. 건축물 안전진단 점검 및 관리 (소규모 노후건축물 등 점검, 안전진단) 3.~7. (생 략)	· 같은 법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21조, 제46조

[토지정보과]

위임사무명	단 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1. (생 략)	1. (생 략)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8조제4항

[건축과]

위임사무명	단 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1.~5. (현행과 같음) < 삭 제 > 6. (현행 제7호와 같음) 7. 건축물 유지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6층 이하로서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하 건축물) 8. (현행 제9호와 같음)	1. (현행과 같음) 2. 건축물 긴급점검, 안전진단 등 점검 및 관리 (소규모 노후건축물 등 점검, 안전진단) 3.~7. (현행과 같음)	· 같은 법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21조, 제46조

[토지정보과]

위임사무명	단 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1.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

	2. (생 략)	· <u>같은 법률 제122조</u>		2. (현행과 같음)	· <u>같은 법 제15조</u>
	3. (생 략)	· <u>같은 법률 제124조의2</u> · <u>같은 법률 시행령 제124조의3</u>		3. (현행과 같음)	· <u>같은 법 제18조</u>
	4. (생 략)	· <u>같은 법률 제124조 제3항</u> · <u>같은 법률 시행령 제124조의2</u>		4. (현행과 같음)	· <u>같은 법 제25조의2,</u> <u>같은 법 시행령</u> <u>제19조의2, 제19조의3,</u> <u>같은 법 시행규칙</u> <u>제20조의2</u>
2. (생 략)	1. (생 략)	· <u>같은 법률 제121조제1항</u>	2.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 <u>같은 법 제14조</u>
3. (생 략)	1. (생 략)	· <u>같은 법률 제144조</u>	3.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 <u>같은 법 시행령 제11조</u> · <u>같은 법 제28조</u> · <u>같은 법 시행령 제20조</u>
4. (생 략)	1. (생 략)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5조	4.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5조
	2. (생 략)	· <u>같은 법률 제6조</u>		2. (현행과 같음)	· <u>같은 법 제6조</u>
	3. (생 략)	· <u>같은 법률 제9조</u>		3. (현행과 같음)	· <u>같은 법 제9조</u>
	4. 과징금 과오납금 환급 및 환부 의자 지급	· <u>같은 법률 시행령 제3조제4항</u>		4. 과징금 과오납금 환급 및 <u>환급가산금 지급</u>	· <u>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4항</u>
	5. (생 략)	· <u>같은 법률 시행령 제4조제3항</u>		5. (현행과 같음)	· <u>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3항</u>
5. (생 략)	1. (생 략)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	5.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 · <u>같은 법 시행령 제 17조</u>

	2. (생 략)	· 같은 <u>법률</u> 시행령 제18조
	3. (생 략)	· 같은 <u>법률</u> 시행령 제19조
	4. (생 략)	· 같은 <u>법률</u> 시행령 제22조
	5. (생 략)	· 같은 <u>법률</u> 시행규칙 제5조

	2. (현행과 같음)	· 같은 <u>법</u> 시행령 제18조
	3. (현행과 같음)	· 같은 <u>법</u> 시행령 제19조
	4. (현행과 같음)	· 같은 <u>법</u> 시행령 제22조
	5. (현행과 같음)	· 같은 <u>법</u> 시행규칙 제5조

[철도교통과]

위임사무명	단 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1. (생 략) <u><신 설></u>		

[교통정책과]

위임사무명	단 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1. (현행과 같음)		
2. <u>자동차관리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u>	1. <u>불법구조 변경차량 지도·단속</u> 2. <u>자동차관리사업에 대한 등록·정비업, 매매업, 중고자동차상능·상태 점검장, 폐차업 등에 관한 사항</u> 3. <u>자동차관리사업 양도·양수 신고</u> 4. <u>자동차관리사업 변경등록</u> 5. <u>자동차관리사업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u>	· 「 <u>자동차관리법</u> 」 제34조 · 같은 <u>법</u> 제53조 · 같은 <u>법</u> 시행규칙 제120조 · 같은 <u>법</u> 제55조 · 같은 <u>법</u> 제53조 · 같은 <u>법</u> 제72조, 제73조 · 같은 <u>법</u> 시행규칙 제117조

[주차교통과]

위임사무명	단 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1. <u>자동차관리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u> 2. (생 략) 3. (생 략) 4. 부설주차장에 대한 다음의 사무 (단, 구청 건축과에서 허가하는 건축물)	1.~2. (생 략)	
5. (생 략)	1. (생 략) 2.~5. (생 략)	· 「주차장법」 제19조의6부터 8까지

[도로정책과]

위임사무명	단 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1.~7. (생 략) 8.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의 도로공사에 대한 다음의 권한	1.~3. (생 략)	

[주차교통과]

위임사무명	단 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 삭 제 > 1. (현행 제2호와 같음) 2. (현행 제3호와 같음) 3. 부설주차장에 대한 다음의 사무 (다만, 구청 건축과에서 허가하는 건축물) 4. (현행 제5호와 같음)	1.~2. (현행 제4호와 같음) 1. (생 략) 2.~5. (생 략)	· 「주차장법」 제19조의6, 제19조의7, 제19조의8

[도로정책과]

위임사무명	단 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1.~7. (현행과 같음) 8.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의 도로공사에 대한 다음의	1.~3. (현행과 같음)	

위임사무명	단 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9.~10. (생 략) <신 설>		

[도시정비과]

위임사무명	단 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1. (생 략)	1. 토지의 형질변경 행위(건축물의 건축을 위한 경우 건축연면적의 2,000평방미터 이하, 6층 이하) 2. 건축에 관한 구청장 신고·허가 대상 건축물의 건축행위(연면적 2,000평방미터 이하, 6층 이하) 3. (생 략) 4. 토지분할(「건축법」 제49조의 규정에 따른 건축물이 있는 대지 제외) 5.~6. (생 략)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 같은 법률 시행령 제51조

위임사무명	단 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권한 9.~10. (현행과 같음) 11. 자전거이용시설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유지·관리)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0조

[도시개발과]

위임사무명	단 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1. (현행과 같음)	1. 토지의 형질 변경 행위(건축물의 건축을 위한 경우 건축 연면적의 2,000제곱미터 이하, 6층 이하) 2. 건축에 관한 구청장 신고·허가 대상 건축물의 건축행위(연 면 적 2,000제곱미터 이하, 6층 이하) 3. (현행과 같음) 4. 토지 분할(「건축법」 제49조의 규정에 따른 건축물이 있는 대지 제외) 5.~6. (현행과 같음)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2~3. (생략)		
4.. (생략)	1. (생략)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및 제30조 ·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의 예방 및 단속에 관한규정」 제12조
	2. (생략)	· 같은 법 제2조 및 제30조 제30조의2 ·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의 예방 및 단속에 관한규정」 제13조 내지 제15조
	3. (생략)	· 같은 법 제2조 및 제30조 ·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의 예방 및 단속에 관한규정」 제16조

2~3. (현행과 같음)		
4..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및 제30조 ·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의 예방과 단속에 관한규정」 제12조
	2. (현행과 같음)	· 같은 법 제2조 및 제30조 제30조의2 ·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의 예방과 단속에 관한규정」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
	3. (현행과 같음)	· 같은 법 제2조 및 제30조 ·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의 예방과 단속에 관한규정」 제16조

[녹지과]

위임사무명	단 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1. (생략)	1. (생략)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제36조
	2. (생략)	· 같은 법률 제24조, 제38조

[녹지과]

위임사무명	단 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1.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제36조
	2. (현행과 같음)	· 같은 법 제24조, 제38조

2. (생 략)	3. (생 략)	· 같은 법률 제41조부터 제43조 까지	2.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 같은 법 제41조부터 제43조까지
	4. (생 략)	· 같은 법률 제45조부터 제47조 까지		4. (현행과 같음)	· 같은 법 제45조부터 제47조까지
	5. (생 략)	· 같은 법률 제49조 및 제53조 부터 제56조까지		5. (현행과 같음)	· 같은 법 제49조 및 제53조 부터 제56조까지
	6. (생 략)	· 같은 법률 제27조		6. (현행과 같음)	· 같은 법 제27조
	1. (생 략)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1. (현행과 같음)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 같은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2. (생 략)	· 같은 법률 제36조 같은 법률 시행규칙 제46조		2. (현행과 같음)	· 같은 법 제3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
	3. (생 략)	· 같은 법률 제36조 같은 법률 시행규칙 제45조		3. (현행과 같음)	· 같은 법 제3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5조
	4~6. (생 략)			4~6. (현행과 같음)	
	7. (생 략)	· 같은 법률 제79조 · 같은 법률 시행령 제73조		7. (현행과 같음)	· 같은 법 제79조 ·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
3. (생 략) 4. 어린이공원 내 어 린이놀이시설 안	8~9. (생 략)		3. (현행과 같음) <삭 제>	8~9. (현행과 같음)	
	1~7. (생 략)			1~7. (현행과 같음)	

전관리에 관한 다음의 사항		
[생태하천과]		
위임사무명	단 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시·도가 관리하는 공유수면에 있는 시설의 관리	1. (생 략) 2. (생 략) 3. (생 략) 4. (생 략) 5. (생 략) 6. (생 략) 7. (생 략) 8. (생 략) 9. (생 략) 10. (생 략) <신 설> <신 설>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 같은 법률 제8조제1항제1호 · 같은 법률 제8조제1항제2호 · 같은 법률 제8조제1항제3호 · 같은 법률 제8조제1항제5호 · 같은 법률 제8조제1항제6호 제7호 · 같은 법률 제8조제1항제8호 · 같은 법률 제8조제1항제9호 · 같은 법률 제8조제1항제10호 제11호 · 같은 법률 제8조제6항 · 같은 법률 시행령 제9조
2. 제1호에 따라 허가	1. (생 략)	· 같은 법률 제13조제1항

[생태하천과]		
위임사무명	단 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1. 공유수면의 관리에 관한 다음 권한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4. (현행과 같음) 5. (현행과 같음) 6. (현행과 같음) 7. (현행과 같음) 8. (현행과 같음) 9. (현행과 같음) 10. (현행과 같음) 11. 공유수면 관리를 위한 조사 및 질문 12. 공유수면의 장애물 제거명령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 같은 법 제8조제1항제1호 · 같은 법 제8조제1항제2호 · 같은 법 제8조제1항제3호 · 같은 법 제8조제1항제5호 · 같은 법 제8조제1항제6호 제7호 · 같은 법 제8조제1항제8호 · 같은 법 제8조제1항제9호 · 같은 법 제8조제1항제10호 제11호 · 같은 법 제8조제6항 ·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 같은 법 제55조제1항 · 같은 법 제6조
2. 공유수면의	1.(현행과 같음)	· 같은 법 제13조제1항

를 받은 자에 대한 다음의 권한	2. (생략) 3. (생략) 4. (생략) <u><신 설></u> <u><신 설></u> <u><신 설></u> <u><신 설></u>	• 같은 법률 제13조제1항 • 같은 법률 제13조제7항 • 같은 법률 제21조	<u>점용·사용허가 및 권리·의무에 관한 권한</u>	2.(현행과 같음) 3.(현행과 같음) 4.(현행과 같음) 5. 권리의무의 이전허가 6. 권리의무의 상속신고 처리 7. 허가기간 연장허가 8. 공사의 착공, 준공신고 처리	• 같은 법 제13조제1항 • 같은 법 제13조제8항 • 같은 법 제21조 • 같은 법 제16조 • 같은 법 제21조 •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 같은 법 제17조, 제18조
3. 제1호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한 다음의 권한			<u><삭 제></u>		
4. 제1호의 허가를 받은 자가 법령을 위반하였을 때의 다음의 조치를 취하는 권한	1. 허가의 취소 2. (생략) 3. 공작물 등의 개축허가 기타의 처리	• 같은 법률 제19조 • 같은 법률 제21조 • 같은 법률 제21조	3. 공유수면 점용·사용 관련 처분에 관한 권한	1 점용·사용허가 등의 취소 등 2. (현행과 같음) <u><삭 제></u>	• 같은 법 제19조 • 같은 법 제21조
5. 공유수면 관리를 위한 조사 및 질문			<u><삭 제></u>		
6. 공유수면의 장애물 제거 명령			<u><삭 제></u>		
7. 공유수면의 사용 제한 또는 금지			<u><삭 제></u>		
8. 제7호 내용의 표지			<u><삭 제></u>		

<u>설치 공고와 이의 변경 취소</u>		
9. (생략)	1.~3. (생략)	「소하천정비법」 제3조제4항
10. (생략)	1. (생략)	
	2.~4. (생략)	
	5. <u>법령위반자</u> 등에 대한 처분	
	6.~11. (생략)	
	12.<삭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8조 부터 20조까지
11. (생략)	1. (생략)	
12. (생략)		

[별표 2]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세정과]

위임사무명	단위사무명	근거법규
1. 해당 동에서 발행하는 세외수입의 징수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건당 500만원 이하의 징수 및 감액결정	「고양시 재무회계 규칙」 제4조제2항

4. (현행 제9호와 같음)	1.~3. (현행과 같음)	「소하천정비법」 제3조제6항
5. (현행 제10호와 같음)	1. (현행과 같음)	
	2.~4. (현행과 같음)	
	5. <u>법령 위반자</u> 등에 대한 처분	
	6.~11.(현행과 같음)	
	<삭제>	「고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8조부터 20조까지
6. (현행 제11호와 같음)	1. (현행과 같음)	
7. (현행 제12호와 같음)		

[별표 2]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제2조 관련)

<삭제>

[징수과]

위임사무명	단 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1. (생 략)	1. (생 략)	· 「지방세 징수법」 제5조
	2. (생 략)	·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3조, 제17조

[복지정책과]

위임사무명	단 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1. (생 략)	1. 의료급여증 연도별 재사용 확인	· 「의료급여법」 제8조제3항
<신 설>	2. 의료급여증 교부, 반납 및 회수	·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찾아가는복지과]

위임사무명	단 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1. 자활에 관한 다 음의 권한	1. 생계급여의 조건제시 방 법 및 결과 통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11조

[징수과]

위임사무명	단 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1.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 「지방세징수법」 제5조
	2. (현행과 같음)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7조

[복지정책과]

위임사무명	단 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1.(현행과 같음)	<삭 제>	
	1. 의료급여증 발급, 반납 및 회수	·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5조
2. 자활에 관한 다 음의 권한	1. 생계급여의 조건제시 방법 및 결과 통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11조

<삭 제>

[장애인복지과]

위임사무명	단 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1. (생 략)	1.~2. (생 략) 3. (생 략) 4~5. (생 략)	· 같은 법 제32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부터 제8조

[건축디자인과]

위임사무명	단 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생 략)		

[장애인복지과]

위임사무명	단 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1. (현행과 같음)	1.~2.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4.~5. (현행과 같음)	· 같은 법 제32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제8조

[건축과]

위임사무명	단 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현행과 같음)		